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5
3. 용어의 정의	6
4. 흥신소와 심부름센타의 실태	7
II. 사립탐정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1
1. OECD가입에 따른 사립탐정제도의 필요성	11
2. 재산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필요성	14
3. 의료사건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16
4. 기업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18
5. 보험범죄 수사의 필요성	22
6. 사립탐정과 국가 수사기관 사이의 보완 필요성	25
III. 사립탐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국가의 통제	27
1. 미국의 사립탐정제도	27
2. 독일에 있어서 사립탐정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적인 근거	40
3. 중국의 사립탐정제도	46
4. 일본의 사립탐정제도	50

IV. 사립탐정제도도입과 현행 법률과의 문제점	53
1. 변호사법과의 충돌문제	53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사립탐정제도의 문제점	56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사립탐정제도의 관계	64
4. 사립탐정제도와 형법과의 관계	70
V. 사립탐정의 자격과 공인의 문제	75
1. 현행 자격기본법과 사립탐정제도	75
2. 입법예고된 자격기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8
3. 사립탐정의 자격과 국가공인화에 대한 방안	80
4.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85
VI. 결 론	93
참고문헌	139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 6호는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호의 내용은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동법 제32조 2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한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자체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사용된 영화를 제작하거나 소설의 제목이 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법률의 인플레 시대라고 하지만 금지하는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특정 명사의 사용을 금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률문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관직 또는 직책은 우리나라의 어느 법률이나 행정조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없을 뿐더러 국가보안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정세를 반영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보겠다. 다만 탐정의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는 없고 오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만 있다는 사실은 신용정보업과 관련해서 탐정이라는 용어의 남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본법은 신용정보업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업무에 관한 법률이다. 신용정보업은 일정한 분야에 한하여 민간인의 신분으로 제3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직업이다. 다시 말하여 소위 탐정이라는 형태의 직업을 제한적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뛰어 넘

어 민간인이 제3자의 사생활이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건전한 취지를 법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입법기술상 제26조 6호는 상당히 조악한 규정인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록 제목에서부터 현행 법률에 형식적으로 위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오로지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그러한 과정에서 용어를 구차하게 변형하여 사립탐정 또는 공인탐정과 유사한 어감을 갖는 다른 변형된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립탐정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 ② 탐정 특히 사립탐정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될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결코 아니라 단지 영어권의 Private Investigation 또는 Private Detective라는 의미를 번역한 용어에 불과하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립탐정이라는 직업군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근대국가의 관료제가 갖는 정체성을 극복하고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혁명의 유산이 뿌리깊게 이어진 시민사회에서는 관료제의 형식적 법치주의 아래에서는 자신들의 민형사상 권리가 관료들에 의해 충분히 지켜진다고 신뢰할 수 없었다. 또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급격하게 비이성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순에 직면하여 공권력만으로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립탐정제도라 하겠다.

또한 영미식 형사재판제도의 본질적 형태인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사법관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사립탐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재판을 받는 시민은 단순히 법적인 판단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추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법정에서 주장하는 절차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인 것이다. 시민은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된 소송구조에서는 사실문제가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여 주는 전문 직업군이 바로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이었다. 결국 유럽에서 사립탐정제도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보아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당사자주의적 재판제도라는 법률문화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 ③ 이러한 이유로 사립탐정제도가 그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도 시대적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시기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의 행정 또는 사법작용은 오로지 국가 공무원만이 해야 한다는 관료주의적 사고가 갖는 한계점을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생소하게 들리던 민간경비 또는 사경비, 경호업 등의 분야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정착되었고 이제는 특수 분야의 민간경비원이 총기무장까지 허용하고 더 나아가 민간교도소제도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나 민간교도소라는 개념들도 역시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 행사라 하더라도 무조건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는 사고를 탈피한 개념 중에 하나였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식적인 수사력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여도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군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직종이 활동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수사도 이제는 community policing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수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작업을 오로지 국가기관만이 해야 한다는 것도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사고로 보인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형사재판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일대 개혁적 변혁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직권주의적 요소와 조서재판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공판정 중심주의로 전환시키려 하

고 더 나아가 배심제도의 도입까지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립탐정제도의 공인과 도입에 대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문제를 덮어 버려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모든 재판과정에서 시민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보수를 받고 도움을 주는 직종과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법률문제는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자체도 모순이라고 본다. 시민들에게 법률과 관계된 모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 얻어 왔던 독점적인 수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을 준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사법정의에 일치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살인범으로 오인을 받아 유죄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돌아갈 보수도 중요하지만 만일 진범을 직접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변호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전문적인 범죄수사능력을 갖춘 수많은 수사경찰, 군경출신의 전직 수사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데 이들의 범죄수사나 조사에 대한 능력과 재능이 퇴직과 함께 사장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겠다. 그들이 소유한 전문적인 범죄수사능력과 기법들이 다시 환원되어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이 정당한 보수가 보장된다면 공적인 수사력의 경쟁적 발전과 함께 범죄발생율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괄하여 지칭하는 소위 사립탐정이라는 직종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물론이고 관계되는 법률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임을 밝히고 더 나아가 사립탐정의 사회적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려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사립탐정은 아니지만 이와 가장 유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홍신소 또는 심부름센터라는 업종에 대해서 직접 무작위로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면담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립탐정이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다.

첫째,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에 외국과의 경상무역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보산업의 태부족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주시하였다. 이러한 정보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사립탐정의 기능을 살펴본다.

둘째, 우리 경찰수사의 현실에서 많은 조사 인력이 투입되어도 국민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형사고소사건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재산범죄나 친고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고소는 경찰의 능력과 인원에 비해 너무 과다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으로 사립탐정제도를 소개한다.

세째, 역시 형사고소사건 중에 국민의 불편함이 많이 제시되는 특수한 분야의 하나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문분야에는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넷째,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현상을 주시하였다. 즉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는 역할을 공권력이 전부 담당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사립탐정이 나름대로의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본다.

다섯째, 보험업은 그 성격상 범죄수사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특정인에 대한 조사가 비공식적이거나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분야에 국가가 공인한 사립탐정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면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보험제도와 사립탐정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섯째, 국가의 수사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분야일수록 사립탐정의 역할이 증대되며 또한 국가 수사기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폴의 기능으로

도 해결하기 어려운 국내법의 해외도피를 실효성 있게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립탐정제도를 제시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사립탐정제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수집 가능한 문헌이나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우리가 가장 중시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분야는 사립탐정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발달된 미국의 사립탐정제도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의 사립탐정제도를 살펴보니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생활 영역과 교류가 미국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는 현저하게 적은 관계로 독일의 사립탐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혁적, 역사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외에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많은 일본과 중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은 불가능하였지만 나름대로 검토하여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립탐정제도가 공인화 된다면 현행 법률과 어떤 분야에서 서로 충돌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사립탐정은 변호사의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과 입법예고 된 자격기본법의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립탐정의 업무와의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또한 형법상의 몇 가지 범죄와 사립탐정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법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다.

3. 용어의 정의

한편 본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용어인 탐정, 사립탐정, 공인탐정, 공인조사제도 등의 용어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한다.

수사관이나 조사관은 경찰, 검찰 등과 같은 국가수사기관에 근무하며 수사나 조사업무를 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의 자격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영어권 국가에서는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라 부르고 있으며 이를 번역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립탐정 또는 탐정이라

고 칭하고 있다. 국가수사기관의 공식명칭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탐정은 사립탐정의 약칭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립탐정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러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직업군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립탐정의 기능과 사회적 실체를 국가가 인정하여 일종의 합법적인 직업으로 취급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사립탐정의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립탐정을 자격제도의 틀에 편입시킨다면 사립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성을 가진 공인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탐정제도가 전무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탐정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하여 편의상 일단은 사립탐정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즉 사립탐정제도가 사회에 실존할 때 이를 국가가 공인하면 공인조사 또는 공인탐정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사립탐정에 대해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이 부여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립탐정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한다면 비로소 공인조사제도 또는 공인탐정제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공인탐정이든 공인조사제도이든 그 인적 구성원의 실체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인 사립탐정을 뜻하므로 사립탐정제도라고 말할 때에는 광의의 개념이고 공인탐정제도라고 부를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한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법률에 의해 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조차 금지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공인조사 또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인 현재로서는 일단 사립탐정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 흥신소와 심부름센타의 실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형태라도 사립탐정의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60년대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뒷조사나 채권회

수 등의 비합법적인 일을 하던 형태의 업종이 사회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법률인 흥신업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이외의 업무를 하는 흥신소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자 70년대부터 변칙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심부름센터라는 업종이었다. 말 그대로 관공서의 민원서류를 대신 취급하는 등의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고 영업을 하지만 역시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런 유형의 업무도 나름대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되자 업체의 난립과 함께 점점 범죄적 성격을 갖는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그러한 불법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는 심부름 센터 등이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사이트로 옮겨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인과 접촉한 뒤 수당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의뢰인이 필요한 타인의 정보를 조사해 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런 업무를 선전하는 유사한 사이트가 유행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²⁾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전화번호 안내(114)에 문의를 하여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타인의 소행이나 경력, 재산상태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주거나 민원대행서비스, 사람 찾기를 하는 업종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자신의 채권확보를 하기에는 경비, 절차의 복잡성, 상당 시간의 소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흥신소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³⁾ 또한 친고죄인 간통의 피해자인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

1) 일요시사, 2002. 6. 18. 335호 ; 무허가 흥신소 사이트 활개 .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인터넷에서 흥신소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폭력배로 알려진 문씨는 지난 1월 모 유명 사이트에 ‘S흥신소’ 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황모(40)씨로부터 ‘아내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황씨 아내를 일주일간 미행한 대가로 활동비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씨는 불륜현장 탐지 및 채무자 소재파악, 사람찾기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8백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 중앙일보, 2004. 8. 17, 사이버 흥신소 청부해킹 성업 ; 돈을 받고 특정인의 e-메일이나 메신저.게임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청부 해킹’이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e-메일과 신상정보를 캐낼 수 있는 ‘사이버 흥신소’시대가 온 것이다.

3) 소액의 채무로써 사기죄에 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 체불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허하거나, 소액재판, 지급명령 등의 합법적 수단으로도 도저히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흥신소 등을 찾아

기까지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업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⁴⁾

대체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법과 사법제도는 범죄의 피해자인 자신들의 어려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결과 특별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민사문 제라는 이유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설사 사기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피해회복에는 또 다른 민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다 쉽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홍신소 등의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한편 배우자의 간통혐의에 대해 의심이 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의 성격상 결정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형편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여 제시하지 않는 이상 간통죄의 고소는 실제로 무용지물 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성격상 상간자인 가해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수사과 소송과정에서 물증확보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 다. 다만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이혼소송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 정에 이혼소송을 의뢰 받은 변호사의 위임장이 있다면 불륜현장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 해 일종의 뒷조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은밀 하게 행해지는 간통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물증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비합법적이지만 홍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비합법적인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와 문제해결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착수금 등을 받고도 채무자의 소재를 찾아 내지 못하거나 성공사례비를 많이 요구하여 문제되는 사례 등 부작용이 상당히 존재한다.

4) 대체로 비용은 업소마다 다르나 간통현장을 증명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진 등의 물증 확보에는 200만원에서 상간자의 신원확인까지 하는데는 300만원, 현장을 의뢰자와 함께 가는 경우는 비용이 더 상승된다. 역시 선불금만 받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지만 의뢰행 위 자체가 불법이라 공권력에 호소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11월 29일자 연합뉴스 및 YTN에 의하면, 서초경찰서는 홍신소 직원을 가장하고 불륜 관계를 파헤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사례금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금품을 뜯은 범죄를 검거한 바 있을 정도로 불법 홍신소 등의 폐해는 상당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5)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담에 응한 홍신소직원들에 의하면 업무의 80-90%가 간통현장 등의 불륜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 한다. 의뢰인들은 대체로 인터넷이나 114 전화안내를 통해 찾아오며, 직원들의 수당은 차량유지비 3만원과 일당 10만원 수준으로 간통사건은 대체로 1주일 정도의 뒷조사나 미행을

결국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는 범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홍신소 등을 이용한다고 보여진다.⁶⁾ 어떠한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수사권과 같은 국가의 공권력은 아무리 완벽하게 체제를 갖추고 있어도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사회의 음지에서 사인간의 분쟁이나 문제의 해결을 돕는 직종을 더 이상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의 법률문화 형성에 역행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홍신소 등을 계속 불법으로 취급하여 단속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사회적 수요가 계속되는 한 의뢰 받은 사건의 청부금만 점차로 고액화 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로 비화하는 문제점만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홍신소와 같은 부류의 직종을 양성화하여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며 그러한 대안 중 하나로 사립탐정제도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홍신소직원들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범죄전과가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6) 경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서 홍신소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폭력배로 알려진 문씨는 지난 1월 모 유명 사이트에 'S홍신소' 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황모(40)씨로부터 '아내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황씨 아내를 일주일간 미행한 대가로 활동비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일요시사, 2002년 6월 18일 335호, 무허가 홍신소 사이트 활개 “불륜현장 단번에 잡는다”

II. 사립탐정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OECD가입에 따른 사립탐정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OECD의 가입 비준안이 1996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2일에 OECD 가입서가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됨에 따라 한국은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교류하는 대부분의 OECD 가입국은 사립탐정제도를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립탐정의 사회적 활동범위와 조사능력은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다. 사립탐정제도의 활성화는 대체로 공식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나 정보처리 능력과 동반하여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물류교류는 물론이고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n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을 일부 체결하였기 때문에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자유로운 이전을 포함하여 서비스무역이라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까지 이제는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약에 의하면 은행·보험·여행·관광·영화운송 등 여러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원인이 되는 거래 자체가 자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화규약을 준수하게 되면 국내의 상품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다.⁷⁾ 즉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사라지게 되어 국내시장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만이 생존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OECD 가입국들은 자국과 자국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노하우가 고도로 축적되어 이제는 하나의 국가산업으로 발전시켜 이를 일종의 국가적 경쟁력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OECD 가입으로 인하여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렸던 지위를 상실하여 어느 정도 수지타산에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3차 산업 부문에 속하는 국내

7) 신현중, 한국의 오이시디가입과 대응과제, <http://yu.ac.kr/~shinhj/html/ra6.htm>.

기업이 시장개방 체제 하에서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분야의 체질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금융과 보험시장 개방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의 관련된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은행과 보험회사까지 들어와 업무영역을 넓혀가면서 외국인 증권회사도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금융과 보험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대출심사기능을 포함한 피보험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과 조사업무의 발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도의 훈련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의 사립탐정들이 자국 기업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정보수집과 조사업무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국내법규정에 의해 사립탐정의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형태의 활동도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사립탐정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탐정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들이 정보경쟁에서 상대적 위축을 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사립탐정이 국내에서 각종 컨설팅회사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⁸⁾ 예를 들어, 최근 프랑스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국내 중소 인터넷쇼핑몰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한 바가 있었다. 루이비통은 또한 재산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쇼핑몰당 5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루이비통은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상표권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바가 있다.⁹⁾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국내 시장에서 프랑스기업의 제품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전에 조사하여 보고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내의 유명 전자상가 부근에는 외국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자국의 컴퓨터 프로그램¹⁰⁾이나, 전자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한국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

8) 이동영,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수사연구 2001년 4월, 11면.

9)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2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성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한 박아무개(35)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데 대해 5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앞으로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를 조사하는 수많은 외국의 사립탐정과 그들에게 협조하는 국내의 탐정유사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외국의 음반회사들의 의뢰를 받은 사립탐정들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부는 국내의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위반에 대한 공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단체로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사립탐정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작업을 수행할 합법적인 사립탐정제도가 국내에 없다면 불법적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난립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OECD라는 것은 WTO처럼 다자간 협상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가입국 사이의 관심분야나 현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의·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에 불과하다. 이러한 OECD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WTO와는 달리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회원국간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¹⁾ 더욱이 정상무역외거래의 주체는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무차별대우와 내국민 대우(national-treatment)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계 사립탐정의 국내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명칭은 사립탐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외국기업의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국내의 어느 실정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공권력으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정도는 수시로 단속할 수는 있어도 외국사립탐정의 국내활동과 외국기업을 위한 내국인 탐정의 국내외 활동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1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프로그램도 국내에서 보호대상으로 취급한다.

11) 신현중, 전계논문, 참조.

2. 재산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필요성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보상을 하여 주는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하나로 1988년 입법된 것이 범죄피해자구조법이다. 동법 제1조는 본법이 적용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개입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급증하는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고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는 2003년도에는 신용카드의 사용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대량 증가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25.6%의 증가를 보일 정도이다.¹²⁾ 사기의 경우는 입건사유의 90% 이상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고소된 사건의 85% 정도가 경찰수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불구속상태로 재판 받는 경우가 전체의 80% 정도에 이르고 있음은 이에 관련된 90년대의 논문 등을 통해 그 대략적 통계치를 짐작할 수 있다.¹³⁾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고소된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정해진 다음 절차로 이전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략 40%의 피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 출두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건은 기소중지가 되어 비공식적으로 종결되고 만다. 이러한 사기죄는 살인과 같은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검거율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¹⁴⁾ 재산범죄의 전체고소사건 중 75% 정도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이 직접 제출되기 때문에¹⁵⁾ 일선 경찰서의 경우는 고소사건 조사요원 1인당 담당하는 재산범죄의 절대수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수사경찰의

12) 2004 경찰백서, 경찰청, 119면 참조, 2003년도 사기죄의 총발생건수는 231, 951건이며 그 증가원인을 기업의 구조조정, 내수부진, 실업률상승, 신용카드남발사용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13) 최인섭 외3인, 고소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형사정책연구원, 1999, 61면 참조 ; 박상기 외 1인,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8.

14) 2004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14-17면 참조,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93.3%이며 그중 살인의 경우는 100%를 상회하나 이에 비해서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의 경우는 69.2%에 불과하다.

15) 최인섭 외3인, 상계서.

업무폭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범죄 고소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피고소인을 직접 수배하여 검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가해자를 빨리 찾아내어 피해 재산의 조속한 회수나 피해상환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범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소인을 전국에 수배를 내려 특별히 검거하지 않는 이상 도주한 피고소인의 행방조차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부족한 경찰수사인력으로는 수많은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궁극적인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피해자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 피해자는 형식적인 사법절차로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만 실제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피해자로서는 범죄로 인한 제2차 피해를 입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법률 조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이 재판 및 수사의 전제조건인 가해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사회에서 국가기관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사립탐정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사설단체나 개인에 불과한 사립탐정들에 의해 소재지 확인 작업이 벌어진다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탐정이 소재지확인수사를 의뢰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체포 피의자 등에 국한하여 피해자가 사립탐정에게 특정인의 소재수사 의뢰를 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한다면 사립탐정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3. 의료사건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의료사고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¹⁶⁾ 사건 자체가 밀실성과 정보 편중성을 갖기 때문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피해자인 일반인이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측 과실을 입증할 전문지식을 가진 계층은 국내에는 동일직종의 의사 밖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일반인이 의사를 상대로 의료행위의 과실여부를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책임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집단농성이나 공개적인 명예훼손, 폭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분쟁이나 의료과실에 대해서 일반인도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는 작업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고질적인 사회적 분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의사나 병원측에서도 치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부당한 불만제기에 대해서 환자측 과실이나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특이체질 등 의학 외적인 사실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대행할 공인된 사립탐정과 같은 신뢰가능한 업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료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가장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는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만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며 더욱이 고가의 변호사 수입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의 승소의 확신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¹⁷⁾

특히 환자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으로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야 하는데¹⁸⁾ 이러한 작업에는 우선적으로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

16) 의료관련 민사소송은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환자측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전에도 이미 매년 600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7) 대체로 의료관련 민사사건에 있어서 환자측 승소율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도 입증책임의 문제 등에서 환자측에 불리한 면이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부담을 지어야 한다. <http://laws.co.kr/main>. 참조.

18) 대판 1983. 12. 13 선고, 85다카1491.

관계는 의사와 병원 및 환자의 주변상황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밝혀 내야 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제시된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측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의료 기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하는 일인데 변호사를 수입하여 법원을 통한 증거보존신청을 하거나 의료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적법절차에 따라 한다면 이미 상당기간이 소요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그 기간 동안에 병원측이 악의로 진료기록을 변조 등을 한다면 환자측에 유리한 판결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최근의 의료행위에는 X-ray, MRI, 초음파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한 진단이 치료에 앞서 선행되기 때문에 판독오류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오진과 그에 따른 잘못된 치료로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X-ray 등으로 용이하게 환자의 치명적인 증상을 판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¹⁹⁾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라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문제는 그 책임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흐름에는 아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해야만 한다.²⁰⁾ 그 결과 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환자측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학분야의 전문적인 사립탐정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수많은 전문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최우선이다.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요원이나 법조인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설탐정 등이 활동할 여지가 있다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겠다.

19) 대판 1987.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20) 대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4. 기업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1992년 미국의 CIA 전직 간부인 Robert Gates는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냉전시 대와는 달리 민간인에 의한 국제적인 산업스파이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²¹⁾ 이러한 경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첨단산업분야에서도 그대로 유용하다고 보겠다.

WTO 출범이후 각국은 상호시장 개방을 표방하면서 자국산업보호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경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개발한 첨단 기술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외국으로 이러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첨단산업의 경쟁력에 문제점이 있음이 수시로 노출된 바 있다.²²⁾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의 적발건수는 51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44조원에 이르며 더욱이 기술유출의 피해를 공개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³⁾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기업의 소유라는 개념을 벗어나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아 국가정보력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 외국으로의 유출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²⁴⁾

21) J.Wolf, Industrial spying comes in from the cold, Reuter Library Report, 1992, August, 3.

22) 법률신문 2004. 12. 4,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을 보면, 국내주요 LCD제조업체에서 공정기술을 대만으로 유출하였는데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만 3천7백억원에 이른다.

23) 매일경제, 2004.10.21, 첨단기술 유출무방비.

24) 연합뉴스, 2004. 11. 24, 국정원은 24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검찰과 경찰 및 기무사가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산업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활동 강화' 보고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첨단기술분야 234개 산업체와 연구소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보안관리 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69개 업체에 대해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했으며, 과기부와 정통부가 참여하는 산업보안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경기.대전.광주.경남 등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 밀집지역에 전담팀을 편성 운영중이다.

지난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정보원들이 이제는 서방세계로 흘러 나와 사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고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전직 러시아 KGB의 고위간부들이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사적으로 정보를 판매하는 일, 즉 사립탐정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정보국의 경우는 이전의 냉전 시대라면 동구권국가에 대해서 국가안보와 관계된 정보에만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동구권국가의 수많은 전직 정보원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적으로 첨단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신경을 써야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⁵⁾ 이제 사립탐정들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국제적인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제2의 냉전시대(Cold War 2)를 열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제2의 냉전시대에는 전직 정보원 출신들이 그들이 익힌 기술, 예를 들어 도청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기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련의 전직 KGB출신들은 이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정식으로 신문 등에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⁷⁾ 심지어는 이전 냉전시대에 비축된 우주산업이나 항공산업과 관계된 고도의 비밀까지도 사립탐정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유럽의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시절에는 그 이전에는 고도의 비밀로 분류되었던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술조차도 이제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²⁸⁾

이러한 국제적인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국내의 첨단산업분야가 안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대체로 외국 중 우리의 산업기술 및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는 의외로 후진국보다는 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57.3%), 미국(16%), 중국(10.8%)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 중 미국은 우리와 달리 사립탐정의 사회 내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고 일본은 사립탐정의 활동을

25) Richard Maxwell, What is spy to do, Social Text 56, Vol.16, No.3, Fall 1998, Duke University Press, p.125.

26) Richard Maxwell, Ibid. at p. 126.

27) Christian Tyler, The enemy within, Financial Times, 1997, 4, 12.

28) Maureen Harrington, Sky eye Colorado firms clarify purpose of commrcial satellites, Denver Post, 1997, February, 16.

범죄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국내기업이 IMF 이후 해외자본의 유치로 인해 기업간의 M&A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경영컨설팅 등의 명분으로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 온 산업스파이들의 정보 수집 활동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고용한 외국의 사설 정보업체나 탐정 등의 활동으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나 이에 대처할 국내법 체계에는 현재 한계가 있는 형편이라 하겠다.²⁹⁾

이러한 범죄를 일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국가수사력에 의존하여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절차와 해당 법규위반 여부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기업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범죄가 기수가 되기 전인 미수나 예비단계, 교사범 등에 관하여는 해당법률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거나 단순히 침해의 위험성만 있는 단계에서는 경찰과 같은 국가수사력에 기업의 기술보호를 요청하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적인 수사력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백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설기관이나 사립탐정에 의해 그 역할이 보충되어야 한다. 사립탐정과 같은 사적인 수사기능을 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공적인 범죄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사회적 이익을 지켜 나갈 수 있으므로,³⁰⁾ 보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사립탐정과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인력을 외국기업이 스카우트하거나 기술협력, 산업연수,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국내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 국

29) 헤럴드 경제, 2004. 11. 27,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 중국계 미국 기업에 유출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 결국 무혐의로 결론날 정도로 현행법으로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30) N.Gabriele, Die Zusammenarbeit der Kriminalpolizei mit Auskunfteien und Detekteien (Forschungsreihe Kriminalwissenschaften Bd.5), 1980, S.142-143.

정원의 자료를 재이용한 통계에 의하면 기업에서 설사 산업기밀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은 겨우 3.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¹⁾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피해는 공적인 수사를 통해 입게 될 기업이미지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은밀하게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피해방지를 위해 보안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이 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에서 행위자의 대부분은 전·현직 사원이며 범죄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³²⁾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립탐정 등이 회사 내에 위장 취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장기간 정보수집을 거치거나 개인프라이버스 침해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의심나는 사원에 대한 개별적인 탐문조사를 하여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³³⁾

기업의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으로 보아 사적으로 기업범죄의 수사나 조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합법적인 양성과 공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업의 내부에서 발생하여 공개적인 범죄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 범죄유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통제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립탐정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31) <http://spy-zone.co.kr>. 산업보안의 설문조사.

32) <http://spy-zone.co.kr>. 산업기밀 유출자는 주로 현직사원(43.6%), 퇴직사원(36.8%), 경쟁기업종사자(12%), 협력업체직원(5.8%) 순이며, 유출된 사실을 피해기업이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개발중인 제품과 유사한 것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될 때(63.1%), 주요 고객이 거래선을 바꿀 때(16.7%),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직할때(13.1%)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내 범죄의 범인은 내부인이고 발각되는 시점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33) 강효훈, 탐정의 세계 - 첨단장비로 무장한 산업스파이와 브레인파워게임-, 시큐리티월드, 2000년 10월; 미국에서 기업의 요청으로 사립탐정들이 산업스파이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기업에 위장취업하여 수사한 내용으로 이제는 우리현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보험범죄 수사의 필요성

우리의 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67조원으로 세계 제7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 등의 범죄도 역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³⁴⁾ 민영보험을 비롯하여 공영보험에 속하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기의 규모는 그 피해액수가 조 단위를 상회하여 추정이 곤란할 정도로 대규모인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기성 범죄의 적발규모는 현재 매우 미비한 형편이다. 더구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계층도 의사와³⁵⁾같은 전문인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³⁶⁾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더욱이 최근의 보험사기는 보다 더 지능화되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사 직원까지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³⁷⁾ 이러한 범죄는 이제는 수사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건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다. 더구나 보험범죄는 모방범죄를 양상할 뿐 아니라 보험금사취를 목적으로 살인, 방화, 납치 등의 다른 강력범죄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범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거나 물적인 증거가 항시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수사를 한다면 사기성을 입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마다 경찰력을 직접 투입하여 수사하기에는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 보험 사기 범행을 시도하려는 유혹을 쉽게 받는 경향이 있다.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자구

34) 2003년도 보험사기 건수는 9,315건으로 작년대비 61.8%의 증가하였고, 적발금액도 606억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2004년 3월 4일, 보도자료(2003년도 보험사기현황) 참조.

35) 대부분 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사기유형은 진료횟수를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36) 고의로 사고를 야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 경미한 부상을 중상으로 위장하는 사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37)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수사참고자료), 2004, 12, 107면 참조 : 병원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범죄유형으로는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거나, 자해, 자살, 살인, 방화 후 보험사기로 위장하기, 사망진단서 등의 문서를 조작하기, 당뇨병진단을 받기 위해 혈액검사 직전에 설탕물 복용하기, 척추 등에 은분을 발라서 CT, MRI 촬영결과 조작하기 등의 수법이 있다.

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단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비전문적 직원으로는 이러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낸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Special Investigation Unit : SIU로 약칭)를 운영하고 있다.³⁸⁾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조사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된 통계는 없으나 상당수 활동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사기성 보험·고의성 방화·사고사를 위장한 보험살인 등으로써 일반보험회사 경영진이나 직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은닉된 범죄를 찾아내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최초로 만든 회사는 삼성화재로써 1996년에 SIU에 해당하는 보상특수팀을 설립하였다. 그 뒤로 현대해상(1997), 서울보증(1997), 동부화재(1998), 해동화재(1999), 엘지화재(2000)가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교보생명이 2000년에 처음 설치하였고, 사설조사기관으로 SIS 금융정보가 2001년 1월에 SIU를 설치하였다.³⁹⁾ 대부분 국내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직은 경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 내에서의 인식이 별로 높지 않아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험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이므로 국가수사권이 일차적으로 범죄인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고소 등을 통한 수사개시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반적 수사절차에 따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수사개시의 단서를 찾아내는 작업은 보다 전문적인 사적인 조사업무로써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보험사기로 지출되고 있는 엄청난 보험금은 결국 모든 가입자나 더 나아가 사회적 손실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에 국가의 공적인 수사력이 적극적으

38) 과거 수년간 국제SIU협회(IASIU) 회원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IASIU의 약 95%가 미국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에서 1996년까지 그 회원수는 820명에서 2,989명으로 257%가 증가하였다. 안철경, 보험사기자료의 계량화를 통한 손보사의 SIU기능 활성화 안, http://www.assuranceforum.com/InsFraud/InsFraud_1/ 참조.

39) 안철경, 전계논문. 주)2. 참조.

로 개입할 여력이 없다면 그 대안책으로 사립탐정과 같은 직종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보험사기 중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의 경우이다.⁴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된 사고, 조직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해공갈과 같은 단체범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 보험사는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조사담당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대체로 전직 경찰관 출신이 채용되어 일반직원과 함께 사건을 관리하고 조사하는데 사고의 현장에서부터 정황증거를 찾아내 사기성여부를 판단하여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합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범죄성을 입증하여 경찰수사에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다.⁴¹⁾

그러나 보험사기는 경제의 불황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⁴²⁾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조사부서는 경영상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영업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상 심사를 할 때에 전직 경찰관출신에 의해 철저한 뒷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한 기능을 공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외부의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40) 금융감독원, 전게서, 106면 참조 :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죄유형을 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전공모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위장이며, 그 외에도 고의로 음주나 역주행, 신호위반 등을 하여 충돌사고를 위장하는 것,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해사고를 야기하기, 운전자 바꿔치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다 보험금 지급을 노린 피해자 끼워 넣기, 사고일자를 조작하기 등의 수법이 있다.

41)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인 보험사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할 경우 편파적인 수사가 될 우려가 있고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험성 사기나 보험금과다지급을 노린 위장교통사고 등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가 직접적인 증거를 스스로 찾아내 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수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42) 안철경, 전계논문, 연도별도 각보험회사의 사기조사팀에서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처벌된 숫자를 보면 매우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 210명에서 1998년에는 348명으로 65.7%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 6월말 현재 326명으로 전년 대비 87.4%의 증가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04년 3월 24일자)에 따르면, 2001년에는 구속된 피의자는 545명, 2002년에는 479명 수준이던 것이 2003년에는 781명으로 전년 대비 74.2%의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범죄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보겠다.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사립탐정제도의 도입은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6. 사립탐정과 국가 수사기관 사이의 보완 필요성

우선 사립탐정제도가 공인된다면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국내법의 해외도피에 대한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인터폴(ICPO-Interpol)에 가입한 회원국이며 현재 3명의 경찰간부를 인터폴 사무총국(The General Secretariat)에 파견하여 국제공조수사에 참가하고 있다. 국내법의 국외도피사범은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⁴³⁾ 인터폴의 성격상 한국 범죄인의 조기 추방을 위해 해당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국내법규 위반행위가 없는 이상 외국인추방제도가 없는 동남아 일부 국가 등으로 도피한 국내범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사기관으로서 더 이상 수사조차 할 수 없다. 설사 우리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죄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각국의 외무부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주한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의 범죄피해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소정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도피한 국내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상대국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도피국에서의 소재 확인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도피국에서의 소재확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후에는 상대국의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 조기에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인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도피한 내국인이 만일 중국으로 도피하여 중국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바로 이러한 특정인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재확인 작업은 해당국의 사립탐정에게 보수를 주고 소재지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43) 박기륜,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2004, 378면 ; IMF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2002년 7월 현재 인터폴 공조수사 대상자가 640명이라 한다.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사립탐정제도가 공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사립탐정 사이의 국제적인 업무연락과 공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사립탐정제도가 공인된다면 이러한 배타적인 국가의 속지주의적인 수사권의 독점으로 인한 국제적 형사공조의 한계를 민간인에 의해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에 대한 추적수사를 피해자들이 비공인된 우리나라의 사립탐정이나 외국탐정회사의 국내지사에 의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현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인들은 수사기관의 전통적인 권위에 더 이상 맹목적으로 복종하여 수사에 협력하지 않으려는 추세에 있다. 철저한 과학수사에 입각하거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모든 범죄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법도 범죄수법의 발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고 첨단 과학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보유한 각종 과학수사장비가 수시로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되거나 이를 다루는 수사관의 교육이 그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또한 수사요원에 대한 과학수사교육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분야별 전문가의 능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 경찰도 사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미 미국의 일부 경찰서에서는 사건초기부터 사체감식이나 현장감식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회사의 법의학 전문가나 과학자에게 의뢰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탐정업계 내부에서도 각자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서감정이나 화재감식·교통사고분석·컴퓨터범죄수사·DNA분석 등 분야별 전문화의 속도는 공적인 수사기관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될 것이며, 경찰의 수사능력도 이에 동반하여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립탐정이 각종 사고나 사건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면 부수적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검거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III. 사립탐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국가의 통제

1. 미국의 사립탐정제도

1) 미국사립탐정제도의 개념

미국의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륙법체계에 익숙한 우리의 시각에서 사립탐정제도를 포함한 미국식 법률제도를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검찰에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순수하게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 형량을 감해 줄 수 있다는 미국식 plea bargaining 제도(유죄협상제도, 사법협상 또는 답변거래제도라고 번역할 수 있음)를 적용하려는 발상도 근본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사립탐정제도의 경우는 미국의 50개 주를 비롯해 수많은 카운티와 시 정부의 독립성에 따라 지역마다 각자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형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지역마다 상이한 조직을 같은 경찰기관만 전국에 걸쳐 약 1만 7천여개가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 하겠다.⁴⁴⁾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법제도의 다양성도 근본적으로는 미국연방헌법의 충성과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향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경우도 미국 50개 주와 특정 도시의 사립탐정제도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 주의 사립탐정제도를 중심으로 다른 특이한 제도를 가진 주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립탐정이라는 제도를 대체로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른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고 이러한 면허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 정부의 권위로 발급된다는 점이 앞으로 우리도 고려할 사항이라 하겠다.

44)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1992.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사립탐정면허는 회사 자체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인 탐정이나 회사의 운영자 즉, 탐정행위를 하는 개인인 운영자(private investigative agencies)에게 지급된다. 이와 같이 사립탐정제도가 면허제라는 사실은 사립탐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 또는 주정부가 어느 정도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2) 미국사립탐정의 업무범위

미국의 사립탐정에 관한 법률은 주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지만 어떤 지역이나 특정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무작위로 추출한 미국의 특정 주에 해당하는 성문규정을 중심으로 본 제도를 살펴보면 플로리다주의 경우 법규 493장(Florida Statutes chapter 493)에서 사립탐정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소정의 규정들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사립탐정이나 사립탐정 사업체와 관련된 면허를 발급하여 준다.

사립탐정의 면허발급과 감독은 플로리다주 정부의 경우는 농업 및 소비자보호국(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 산하에 있는 면허과(Division of Licensing)에서 관장하고 있다.⁴⁵⁾ 물론 주에 따라서는 사립탐정을 관할하는 부서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버지니아 주일 경우는 형사사법국(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사립안전과(Private Security Section)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에 따라 사립탐정의 면허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labama, Alaska, Colorado, Idaho, Mississippi, South Dakota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의 사립탐정 면허자체를 발급하지 않는다.⁴⁶⁾ 그러나 주정부가 사립탐정의 면허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관할법원이나 시 정부 차원에서 대신 면허를 발급하기도 한다. 농업을 기

45) [http:// licgweb.doacs.state.fl.us/investigations/about.html](http://licgweb.doacs.state.fl.us/investigations/about.html). 이는 플로리다주정부의 면허과 사이트로써 이하에서는 플로리다주정부사이트로 약칭한다.

46) <http://stats.bls.gov/oco>. U.S. Department of Labor. 미국 노동성 및 노동통계청 사이트로 미국의 각 직업별 설명을 개괄적으로 하고 있다.

반으로 하는 Kentucky주와 같은 경우는 현재 사립탐정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립탐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사립탐정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해당 주에 대도시가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농촌지역인지, 기반 산업이 무엇인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립탐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여부에 따른 차이인 것이다. 사립탐정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금지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가진 주는 없다.⁴⁷⁾

한편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 사립탐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주와 조약을 맺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3년 4월 16일에 플로리다주 정부는 몇몇 다른 주와 상호조약을 맺어 플로리다주의 사립탐정이 다른 주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조약을 맺은 다른 주의 사립탐정도 플로리다주에서 특별한 면허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으로 인해 사립탐정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주 경계를 넘어서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플로리다주의 사립탐정이 다른 주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굳이 해당 주에서 사립탐정면허를 다시 발급 받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상호조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간섭기능을 제거할 수 있어서 사립탐정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며 또한 사립탐정의 수사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든 사립탐정이나 사립탐정사무소는 일단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전문가나 소정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 또는 비도덕적인 성품의 사람들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지에 해를 끼친다고 보아 이러한 사람들은 사립탐정을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47) <http://www.crimetime.com/licensing.htm> “ Crime Time Publishing Co.”

48) 이러한 사립탐정에 관한 주 사이에 체결한 상호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탐정은 자신이 속한 주에서 사건의뢰를 수임 받아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사립탐정은 한 사건 당 30일 이내에서 다른 주에서 수사 할 수 있다. 이는 조약을 맺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60일 까지, 테네시주의 경우는 15일 한도에서 가능하다. 셋째, 사립탐정은 다른 주에서의 탐정사업이 금지되며, 또한 탐정사업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거나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조약은 상호조약이기 때문에 체결한 주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플로리다주가 체결한 주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루지애나, 노츠 캘로리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주에 불과하다. 플로리다주정부 사이트 참조.

때문에 사립탐정의 업무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es)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 주정부가 항시 사립탐정을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사립탐정은 미국 사회에서는 자유업이지만 사립탐정도 공공의 복지에 봉사하고 또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사립탐정이나 사무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의뢰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⁴⁹⁾ 이러한 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허 발급을 전제로 한다. 대체로 사립탐정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을 플로리다주 정부의 성문규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 범죄나 위법행위 또는 미국정부에 대한 위협을 중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위해 정부와 하청계약을 맺는 일.

둘째, 특정인이나 특정인 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파악하는 일.

셋째,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이나 그 밖의 사람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일.

넷째,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

다섯째, 분실 또는 절취된 재산의 행방을 찾거나 회복하는 일.

여섯째,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등을 밝혀 내는 일.

일곱째, 범죄수사나 심판위원회, 중재, 민·형사재판이 행하여지기 전에 앞으로 사용될

49) 현재 (전원재판부) 2002. 7. 18, 2000 헌마490. : 사회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직종일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립탐정이나 흥신소, 심부름센터, 채권회수회사 등이 해당 법규의 단속을 피해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광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일 경우도 변호사업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 2항에 의해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등을 제한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세칙 제4조 제2호에서도 변호사 사업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만일 공인된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공익성을 갖는 직종으로서 나름대로 광고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의 광고제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가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재판 도중에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는 바람에 각하 된 바가 있다.

50) 플로리다주정부 면허국 사이트, “the Private Investigative Industry” 참조.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일 등이다.

이와 같은 미국사립탐정의 업무범위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만일 사립탐정이 공인된다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기능 할 수 있는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사립탐정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다면 변호사나 다른 직종과의 업무상의 마찰이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립탐정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외국의 입법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⁵¹⁾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3) 사립탐정과 형사사건 변호사와의 관계

미국은 통상적으로 약 40만 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형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1% 정도라고 본다.⁵²⁾ 제대로 실력이 인정된 사립탐정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실확인 문제와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재판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탐정회사의 도움이나 고도의 연관성 없이 단독으로 형사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사립탐정의 도움에 의존하는 변호사가 급증하자 사립탐정 산업도 1980년대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1994년도에는 이미 사립탐정업의 매출액이 33억불 정도에 이르며, 2000년도는 46억불로 추정될 만큼 대규모 시장으로 형성되었다.⁵³⁾

미국 변호사들에게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협력자가 사립탐정들이다.⁵⁴⁾ 미국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측면은 사

51) 1999년 입법추진 중이던 공인탐정법안의 제3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립탐정의 관련 법규와 유사하다. 공인탐정법안은 본 논문 부록 참조.

52) 이백철, 박병식,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1998, 55면 참조.

53) Jeff Barge, Thanks partly to Lawyers, PI income soars, ABA Journal, 1994. 12. P. 18-19.

54)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5년 O.J.Simson 이라는 미식 축구선수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의 수집을 사립탐정들이 수집하여 변호사의 무죄 변론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당시 피고가 지불한 변호사비용 보다

실문제를 제대로 알아내어 배심원에게 호소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유능한 사립탐정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하찮은 것이라도 형사소송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와 더불어 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관건은 사립탐정들이 사실관계와 증인, 증거로 사용될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⁵⁵⁾ 미국의 형사재판은 공판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각자 사건 뒤에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어 그러한 자료를 소송전략에 유리하게 분석하거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인들을 찾아내 인터뷰하는 일들을 통해 소송을 이끌어 나간다.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신원을 법정 등에서 폭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사립탐정은 그러한 점에는 구속받지 않고 익명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형사사건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들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주신문(direct examination)이나 반대신문(cross examination) 등의 기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 대화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이런 법률적인 신문기술로는 일반인인 범주의 목격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에 더 어려움이 있다. 법률적인 대화로 접근하는 것 보다 일반인에게는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립탐정은 변호사가 하기 힘든 이런 기술에 뛰어나야 한다.

미국사회의 각종 소송에 있어서 사립탐정은 변호사와는 또 다른 측면, 즉 사실발견과 정보획득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잠재적인 무기로 등장한 것이다. 소송이란 정보에 의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 상대방에게 반격을 받아 그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재빨리 이를 재반박 할 수 있는

도 사립탐정에게 지급된 액수가 더 많았다는 소문도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www.geocities.com/dianechilds2002/skakel.htm 를 비롯하여 여러 사이트가 있다.

55) 강효훈, 전계논문, 27면. 이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재수사를 사립탐정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결과 무죄를 증명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 역시 사립탐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4) 기업관련 소송에서의 사립탐정의 역할

형사사건 이외에도 대부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기업 사이의 상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인을 찾아내는 것도 사립탐정에게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 심지어는 유명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들 사이의 기업소송에서도 이러한 사실확인 문제는 유능한 사립탐정의 도움으로 승소하는 경우가 있다. 2003년도에 맨하탄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석면(asbestos)을 사용하는 기업과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인 근로자가 패소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결정적인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이미 오래 전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었는데 이를 불과 몇 일 사이에 찾아내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 소송을 유리하게 뒤집은 사례도 있다.⁵⁶⁾

이러한 역할은 아무리 유능한 로펌의 변호사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며 사립탐정만이 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다. 사립탐정은 이제는 그 능력에 따라 로펌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실발견(factfinding)과 각종 자료를 익숙하게 검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 컴퓨터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와 경쟁사인 폭스바겐 사이에 대규모로 기업비밀문서가 유출되어 소송이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써 폭스바겐사가 유출된 그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라고 비밀스럽게 고용한 컴퓨터 전문가를 직접 찾아내 진술을 받아 낸 것도 사립탐정이었다.

1993년의 무역빌딩이 테러를 당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당시 그 빌딩의 관리자가 테러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70명의 피해자에 의해 집단으로 20억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적이

56) Larry Smith, How Attorneys and Investigators Work Together in the Post-Enron Environment, Of Counsel, April. 2004. P.16-17.

있었다.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그 빌딩관리회사의 전직 안전고문이 이미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역시 사립탐정에 의해 밝혀낸 바가 있다.

또한 아메리카 항공사와 노스웨스트 항공사 사이에 항권권 발권과 경영예측에 관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된 디스켓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소송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도 역시 사립탐정들이었다.⁵⁷⁾

이와 같이 사립탐정은 경쟁기업 사이의 소송에 관여하여 법률적 쟁점이 된 부분을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내부의 문제로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는 일도 사립탐정들의 새로운 업무 분야로 등장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립탐정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내의 범죄나 기업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공적인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기업사이의 소송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나 전자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정보절도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사립탐정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립탐정업계는 기존의 간단한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의 시장이 해외로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문변호사들은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해외에 있는 잠재적인 사업파트너가 될 상대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을 비롯한 각종 조사를 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기업이 거래할 상대국가의 기업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의 부패방지법과 유사한 미국의 국내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저촉되어 기업의 신뢰성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기업에 대한 각종 과거의 경력 등을 알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거래할 상당수의 외국기업들 중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실제로 국유화되어 있거나 공법인 소유의 기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수요에

57) Jeff Barge, a.a.O., p. 18.

맞추어 The Parvus Co. of Baltimore와 같은 일부 사립탐정회사는 전직 소련KGB 요원까지 고용하고 있다.⁵⁸⁾

한편 미국에서는 사립탐정들이 법원에 기소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영역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되고 있다. 판사들은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업주에게 명령을 내려 정식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의 자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작업장 등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명령을 소송 당사자가 지키는 것도 미국 소송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일종의 plea bargain과 같은 맥락에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the Geneva Enterprises Inc. 사건에서는 1993년 9월 콜롬비아 지역 연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계된 회사들에게 25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회사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 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한 명령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기소내용은 기각하여 주었다. 이 회사들의 기소 내용 중에는 자동차 판매과정에서 마약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 세탁을 해주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사립탐정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회사의 자금이 흐르는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제 사립탐정들에 의해서 미국의 기업문화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국 사립탐정들은 대체로 전직 수사관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보수는 시간당 125불에서 225불까지 다양하다. 또한 사립탐정회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재고용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0년도에 미국엔 이러한 사립탐정 회사가 2만3천여 개 있으며 여기에 속해 있는 탐정은 약 9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⁵⁹⁾

5)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가정사건에 있어서 사립탐정의 역할

미국의 사립탐정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일에도 종사하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이라고 하여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전부 담당할 수는 없다. 예를

58) Jeff Barger, a.a.O., p.19.

59) Ebenda. p. 19.

들어, 상점에서 계속적으로 소매의 절도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경찰이 동원되어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인력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상점주인은 사립탐정에게 절도사건을 의뢰하면 나름대로 수사를 하여 증거를 찾아내 누가 절도범인지를 밝혀 내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상점 주인은 자신이 판단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비로소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와 같은 상점절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0억불, 피고용인에 의한 상점의 절도피해액도 12억불에 이르는 형편이므로 사립탐정의 업무분야에는 상점절도의 수사의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사립탐정은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절도 사건이나 상해보험의 진상조사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추측에 의하면 미국은 보험청구의 25%가 대부분 사기성 성격을 갖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험분야에 있어서 사립탐정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 외에 가정문제에도 사립탐정들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가 이혼과 관련되어 배우자의 부정에 따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주는 일이라 하겠다. 이미 이러한 이혼을 위한 사립탐정의 증거조사는 보편화된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아나 어린이 학대사건에 대한 조사의뢰도 사립탐정의 주 수입원의 하나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대로 양육하는지, 아이들에 대한 감금이나 학대 행위 등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심지어 야간에 애들을 집에 혼자 두고 남자가 혼자 술집에 갔다면 이는 유아 학대나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⁶¹⁾ 그밖에 친자확인소송 등에서도 사립탐정은 관련된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업무에도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어린이나 유아가 관련된 사건을 의뢰 받으면 그 의뢰인의 이익이 아닌 유아 등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을 일종의 윤리적인 철칙으로 삼고 있다.

60) Philip Hope, Alberta's Proposed Privacy Act Worries PIS, Western Report, 1998, 9. 28, Vol.25, p.20.

61) Philip Hope, a.a.O., p.21.

6) 사립탐정의 종류와 자격요건

미국의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립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의 종류는 그 능력과 업무 범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Florida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 사립탐정의 경우도 C, CC, M 또는 MA라고 약칭하여 불리어지는 3 종류의 면허가 있다. C 인 경우는 일반적인 사립탐정, CC의 경우는 사립탐정의 인턴과정에 있는 경우이고, M 또는 MA면허는 사립탐정사무소의 매니저 자격을 뜻한다. 또한 사립탐정사무소도 A와 AA로 표기된 두 가지 면허가 있는데, 전자는 사립탐정 사무소이고 후자는 그 사무소의 지부를 뜻한다.⁶²⁾

한편 업무의 범위에 따라 사립탐정의 면허가 달라지는 주도 있다. 예를 들어, connecticut 주는 순수한 사립탐정만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반면에 사립탐정과 경비업 또는 화재 수사를 겸업할 수 있는 면허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립탐정 사무소의 면허는 주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주 정부로부터 갱신을 받아야 하며 신규면허 취득시나 갱신시에는 소정의 면허세를 지불하여야 한다.⁶³⁾

사립탐정의 면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플로리다 주의 경우라면 18세 이상인 자로써,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연방 이민귀화국에서 취업할 권한을 부여받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와 같이 엄격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으로 자격요건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경력 이 없거나, 도덕적 성격에 이상이 없는 자로, 정신병이나 알콜 남용, 재산낭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자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주 정부의 법집행기관 및 FBI에서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준다.

그러나 사립탐정의 직업윤리는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립탐정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 너무 단순하여 누구나 원하면 사

62) 플로리다주정부 사이트, “Types of Licenses”

63) 이는 connecticut 주의 경우로써 자세한 사항은 <http://www.state.ct.us/dps/> 참조. connecticut 주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처음 사립탐정사무소면허(private detective agency license)를 발급 받을 때에는 7백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할 때에는 6백불을 내야 한다. 개인탐정 면허의 경우는 처음에는 6백불이며 갱신시에는 4백5십불을 지급한다.

립탐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만 몇 세 이상, 범죄전과가 없고,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정도의 규제만 있을 뿐이다. 물론 실제로 사립탐정을 하려는 사람은 전직 수사관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일반인이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여 사립탐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California주에서는 다른 주에 비해 그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워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요건 이외에 경찰학과목이나 형법, 사법행정 등의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3년 또는 6천 시간 동안 사립탐정 사무소에서 연수를 받은 경력이 있어야 면허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⁶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사립탐정협회 등에서는 가급적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보다 더 까다롭게 설정하여야 하고 상당 기간동안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사립탐정의 윤리강령도 제정하여 이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시도하려고 한다.⁶⁵⁾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사립탐정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1980년 이후 그 수가 사실상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였지만 철저한 능력위주의 경쟁과 자유경쟁체제로 인하여 파산하는 사립탐정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무기소지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탐정이라고 하여 무기소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플로리다주의 경우라면 만 21세 이상인 사립탐정이나 수습과정에 있는 사립탐정으로써, 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등급의 무기소지 면허증을 가진 자라면, 업무와 관련 있거나 면허국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무기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외부에서 보이게 소지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⁶⁾

64) 사립탐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of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이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담당부서에 사립탐정 관련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65) Philip Hope, a.a.O., p.2.

66) 플로리다주정부사이트, "Private Investigation Firearms".참조.

7) 탐정면허가 필요없는 경우와 면허의 제한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굳이 주 정부로부터 사립탐정의 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일반적인 조사와 관련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여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립탐정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서 그 회사의 내부적인 경비나 회사내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에 국한하여 종사한다면 굳이 탐정면허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의 공무원이거나 주정부의 보험국에서 발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보험수사관이나 보험정산인·면책계약·상업신용도 및 보험신청인의 재정상태·습관·신용도에 관한 수사상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은행·신용조합·대출회사 등에서 소비자의 신용조사에 종사하는 사람, 주정부가 발행하는 특수 면허증을 가진 자로써 직업상의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 연방정부기관에 배타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 등도 역시 면허 없이 사립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주 정부의 사립탐정 담당 부서에서는 주 법률에 의해 사립탐정이 범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법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주 정부의 사립탐정 담당부서에서 직접 면허취소나 업무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⁷⁾

67) 사립탐정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정부가 인정한 일반적인 무기소지면허도 없이 총기를 소지하였을 경우
2. 플로리다주일 경우는 30 만불이며 그 외에 각 주에서 정한 일반적인 안전보험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하거나 미확인된 수사상의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4. 물리적인 침해에 대해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외에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경찰마크와 유사한 배지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가 발급되면 사립탐정 신분증명서와 배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6. 면허 없이 수사하는 경우 등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항시 민간경비산업, 사립탐정업, 피해복구산업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편, 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

2. 독일에 있어서 사립탐정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적인 근거

1) 독일에서의 사립탐정의 발전과정

18, 19세기부터 범죄나 사건해결을 개인적으로 수사하는 사립탐정회사나 사무소가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⁶⁸⁾, 미국⁶⁹⁾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직종이 생긴 것이 지난 1세기 정도에 불과하다.

1860년에 Salomon이라는 중개인이 스테틴(Stettin)이라는 작은 도시에 “폼메른(Pommern) 지방과 스테틴 지역의 상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탐정회사”를 차린 것이 처음이다.⁷⁰⁾ 1861년에는 Römer가 드레스덴에 “탐정 및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베를린에서는 1880년에 Rossi가 최초로 자신이 직접 활동하는 사립탐정을 개설하였다.⁷¹⁾ 현재 독일에서도 가장 역사 깊고 전세계적으로 지점을 갖춘 일종의 채권추심회사(inkasso)인 쉬멜퐁(Schimmelpfeng GmbH)도 이 시기인 1872년에 사립탐정회사로 시작하였다.⁷²⁾

그 후 19세기말까지의 산업발전시기를 비롯하여 일차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독일 전역에 있는 대도시에는 사립탐정사무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 시기의 이러한 사립탐정회사의 설립자들은 대체로 전직 수사관이나 경찰관리들이었다. 그

68) http://www.cnsf.org/fr/detectives/historique_du_detective.htm/ 최초의 사립경찰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생긴 사립탐정의 시작은 1825년 파리 경찰청장이었던 Delaveau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 후 1832년에 Eugene Francois Vidocq에 의해 최초로 탐정사무소가 개업하였다. 프랑스는 탐정을 사립경찰(Police Privee)이라는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69) 1850년에 Allan Pinkerton에 의해 탐정사무소가 차려진 이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여 1994년부터는 Pinkerton Security & investigation Service라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전세계 70개 국가에 지점을 두고 있다. 주간동아, 2000년 1월 13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의 컴퓨터게임제작 업체들이 이 회사 한국지사에게 의뢰하여 용산시장에 불법으로 자신들의 회사제품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런 종류의 사건의뢰를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200 여건씩 의뢰받고 있다.

70) A.Peilert, Das Recht des Auskunftei und Detekteigewerbes, Duncker & Humboldt, Berlin, 1996, S.77.

71) http://www.bdd.de/Download/EntwicklungStandMai2003_Homepage.pdf. Entwicklung des Detektivgewerbes in Deutschland. september 2003/Josef Riehl. 이하 재인용시 Entwicklung으로 약칭. ; Kocks, Geschichte der Detektive in Deutschland, ZAD-studie, Geldern Ausgabe März, 1990. S.4.

72) A.Peilert, a.a.O., S. 77 ; 이 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schimmelpfeng-forderungsmanagement.de/index.cfm>. 참조.

들은 이미 범죄수사 등에 적합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탐정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그 당시의 사립탐정의 주요 업무는 주로 이혼이나 민사적인 해결방안과 연관된 사건을 취급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미 1886년경에는 사립탐정업계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법자, 행정관료, 법원, 의회, 경제협회 등에 대항하여 전국규모의 사립탐정협회를 조직, 총체적인 이익집단(interessenvertretung)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⁷³⁾

바이마르 공화국은 공권력이 약화되어 시민의 사적인 안전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시절이다. 사적 영역이나 사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들이 경찰이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경찰 역시 다른 국가기관처럼 허약하다 보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립탐정들이 보수를 받고 개인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었다.⁷⁴⁾ 수많은 탐정이나 경호회사는 자신들의 특별한 직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이나 사기업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20년 5월 12일에는 각종 국가의 서류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탐정이나 정보회사도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법이 부령으로 공포되어 사립탐정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탐정회사가 많이 생기면서 조사 등의 직무를 행하는 업종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조합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전국 탐정회사 연맹(reichsverband)과 또 다른 연맹이 일차대전 후에 일단 폐쇄되고 나서 후에 두 연맹이 독일탐정 동맹(reichsbund)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마르에 생겼다. 그때인 1920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헐테스하임에서 독일탐정신문(Deutsch Detekive-Zeitung)도 창간되었다.⁷⁵⁾

행정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25년에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탐정이나 탐정회사가

73) Entwicklung, S.1.

74) 우리나라의 경우 홍신소 등의 생겨난 시기는 산업활동이 본격화되던 60년대 말부터이다. 이 시기는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분야가 주로 집권세력의 정권유지 및 대공수사분야이었기 때문에 민생치안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75) G. Neumann, Die Zusammenarbeit der Kriminalpolizei mit Auskunfteien und Detekteien, Forschungsreihe Kriminalwissenschaften Bd.,5, 1980, S.40.

1321개가 있었다.⁷⁶⁾ 탐정연맹의 노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직업으로써 탐정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얻으려고 시도하여, 1936년 12월 14일에는 이에 대한 독일제국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었다.⁷⁷⁾ 이러한 탐정업을 일종의 직업으로써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을 의무를 부여하려는 탐정연맹측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후 탐정연맹은 나치시절인 1933년에는 독일노동전선(Deutsche Arbeitsfront)에 속한 탐정직업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홍신소와 탐정업 폐해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 1939년 2월 1일에 제정되어 탐정 업무를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⁷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독일 사정은 마치 1920년대와 비슷했다. 전쟁이 끝난 후의 독일의 대도시 경찰이나 주 경찰은 시민의 권리를 범죄로부터 지키기에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기인 그 시기엔 탐정업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하였다.

1946년 2월 27일에 이미 뮌헨에 사단법인 독일탐정연맹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1946년 6월 15일 뮌헨의 4군데 점령지에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스스로 구성하였음이 시정협의회에 보고되었다. 같은 해 가을부터 서방측 점령지 3군데에서는 순수한 탐정업무가 허가되었다. 물론 이러한 허가에는 1946년 9월 23일에 공포된 홍신소나 탐정업의 인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인가를 주는 경우에는 탐정을 하려는 사람의 인격이나 전문적인 자격이 전제되었다, 그러나 1948년에 가서 직업규칙을 다시 제정할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다. 반면에 뮌헨의 1군데 소련의 점령지에서는 군정당국에 의해서 1947년부터 탐정업이 금지되었다.⁷⁹⁾

사단법인 독일탐정연맹(Verband Deutscher Detective e.V.)은 바이에른주 의회 경제분과에서 재인가 받아 유지되다가 명칭만을 독일탐정 및 개인정보회사연맹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줄여서 VDD라고 한다. 그러다가 1949년에 다시 명칭을 변경하여 바이에른

76) A.Peilert, a.a.O., S.92 ; 1925년에는 독일에 있는 탐정회사는 1,321개이었으며 그 구성원은 7,624명이었다. 또한 경비회사도 437개나 되었으며 소속된 경비원의 수도 7,742명 이었다.

77) Entwicklung, S.1.

78) A.Ppeilert, a.a.O., S. 93, Anm., 102.

79) Kocks, a.a.O., S.12 ; A.Peilert, a.a.o., S.96, 1990년부터 동독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탐정업이 홍신소와는 달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다.

주 연맹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뮌헨시에 자리 잡았다.⁸⁰⁾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후인 1950년 6월 11일에 전국규모로 탐정업을 통괄하는 사단법인 전국탐정협회(BDD)가 확정되었으며 Hannover 구재판소(Amtsgericht)의 협회목록에 정식으로 등록하였다. 1952년 8월 8일에는 탐정협회가 연방경제장관에 의해 정식으로 직업단체로 등록되었고, 기존의 VDD는 1950년 12월 20일에 폐지되었다. 1953년에는 협회차원에서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1920년대에 그랬듯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⁸¹⁾

이는 일종의 교직처럼 탐정업도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으려는 노력의 시작이었다. 주로 입법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심지어는 그러한 노력이 왜곡되어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57년 6월 15일에는 탐정협회의 총회 결과에 따라 탐정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가입된 모든 회원들을 교육 발전시키는 역할을 위임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탐정업에 대한 새로운 직업신고에 의해 1960년 6월 25일 쾰른에 국제탐정협회(BID)라는 이름의 협회가 새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탐정을 비롯하여 흥신소(기업상담소)들이 활동하게 되었으나 하나의 협회만으로는 충분히 그들을 대표할 수 없게 되어 1961년 9월 24일 프랑크푸르트와 메인주에서 의원총회가 열려 새로운 협회, 즉 ‘사단법인 탐정과 흥신소 및 채권회수회사 중앙연맹’(ZV)이 생겨 베를린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 후 탐정과 흥신소는 채권회수회사와 분리되어 ‘사단법인 탐정 흥신소 중앙연맹’으로 바뀌게 된다.⁸²⁾ 기존의 두 종류인 탐정협회 즉, BDD와 ZV에 가입된 회원들은 서독과 유럽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 그들의 능력을 결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회원들은 1983년 7월 5일 Friedrichsdorf와 Hessen주에서 새로운 총연맹을 결성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독일탐정연합연맹’(BDD)을 탄생시켰다. 이는 1950년이래 직업연맹을 결성하겠다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며 현재 전세계 11개국에 BDD의 회원들이 있게 되었다.

유럽 각국의 경제나 정치적인 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제 교류가 증가하는 현상은

80) Entwicklung, S.2.

81) A.Peilert, a.a.O., S.94.

82) A.Peilert, a.a.O., S.108. ; Entwicklung, S.3.

더불어 탐정업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탐정이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고 이에 순응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BDD와 오스트리아 탐정연맹(ODV), 스위스사립탐정전문협회(FSPD) 등이 통합하여 1963년 12월 7일 국제탐정연맹위원회(IKD)를 Wien에 설립하였다. IKD회원은 자국 탐정연맹에 소속된 채로 가입이 가능하여 오늘날에는 22개국의 다양한 탐정협회가 IKD에 가입되어 있다.⁸³⁾ 유럽에서 상품의 흐름이 마찰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탐정의 업무 수행이 초기에는 국경을 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이젠 탐정업무가 국제적으로도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되어 버렸다.⁸⁴⁾

경제의 범세계적인 성장과 더불어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국제적인 분쟁들이 결국 더 광범위한 탐정의 활동영역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있다. 그 결과 1966년에 World Association of Detectives (WAD)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미 1925년에 그와 유사한 국제적인 탐정조직이 존재하였으며, 그 후 1950년 9월에 World Secret Service Association 이라는 이름으로 결합된 바가 있다. 탐정이 유럽에 등장한 초기시절부터 이미 탐정업은 당연히 국제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양식 있는 탐정업의 선구적인 모델을 설정하여 이에 접근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현재 WAD에는 세계 각국의 약 760여 명의 탐정이 가입되어 있고 그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적인 성장과 더불어 범죄도 국경의 한계를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탐정업도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⁸⁵⁾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경영자들이 독일이나 유럽에서 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립탐정의 법적근거

독일의 각주의 주지사는 영업법(GewO) 제14조에 의해서 직업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사적인 조사업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⁸⁶⁾ 직업신고에는 다양한 형태의

83) Entwicklung, S.4.

84) A.Peilert, a.a.O., S.182.

85) Entwicklung, S.4.

자격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98년 10월 1일 GewO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38조에 따라 담당 부서는 즉시 직업신고를 받아줄 수 있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경영자의 신용성여부를 심사하여 직업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⁸⁷⁾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립탐정의 경영자는 연방중앙등록법(Bundeszentralregistergesetz) 제 30조 5항에 의한 품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관련 관청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청은 직무상 이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탐정업은 GewO 제38조에 의해 ‘감독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 정부에서는 법령에 의해 탐정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탐정사무소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업진행상황이나 업무파트너, 고객이나 관계된 3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상점탐정(Kaufhausdetektiv)의 경우도 직업에 관한 법률상 경비업의 일종이다. 상점탐정도 직업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GewO 제34조에 의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2003년 1월 1일 개정된 GewO 제34조에 대한 개정안의 시행과 2003년 1월 15일의 경비업시행령(Bewachungsverordnung ; BewachV)에 의하면⁸⁸⁾ 직업으로써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부과된 명령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제 2003년부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중요한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즉 신청인은 :

- * 경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 * 경비업무상 필요한 도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자신이 의무자가 되는 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규정을 교육받은 IHK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자신이 상점탐정과 같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에 특수한 능력이 있으면

86) A.Peilert, a.a.O., S. 254.

87) A.Peilert, a.a.O., S.506.

88) BewachV는 주로 경비업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경비원은 특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우리의 경범죄처벌법과 같은 성격을 갖는 몇몇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비기술 등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IHK로부터 전문지식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사건의 위임이나 수집한 정보를 고객에게 돌려 줄 의무를 포함한 개별적인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는 등의 경영상의 장부를 비치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물론이고 해당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당할 때에는 이를 수인 하여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는 독일 헌법 제13조(주거불가침의 자유)의 권리가 제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상점탐정의 연합이 반복되어 설립되었고 또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1년 11월 12-13일 열린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위원회에서 영업법을 결의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을 보았다. 이 법에 의하면 상점탐정은 경비업종에 속하며, 그 연합도 역시 경비업종연합의 일부라는 점은 2개의 중요한 판결로써 확인되었다. 즉, 1982년 1월25일의 바이에른주 고등법원(BayObLG) 판결 (3 Ob OWi 225/81)과 1993년 1월 22일의 쾰른 고등법원(OLG) 판결(Ss 447/92(B)- 191B)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사립탐정과 상점탐정은 영업법상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과 양자는 행동영역상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⁸⁹⁾

3. 중국의 사립탐정제도

중국에 있어서 사립탐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소수의 외국논문이나 관련 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아직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범죄수사분야에 있어서 사립탐정이라는 개념조차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중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중국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수집이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중국은 1992년 5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웬첸 등 5개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외국유사사무소가 중국 내에 분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관한 임시규정을 제정하여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입법 조치를 하였다. 중국은 한국·일본에 비해 법무서비

89) Entwicklung, S.5.

스 시장 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법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재 중국 내에는 모두 110개의 외국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가 설립돼있고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⁹⁰⁾

국내의 법무 법인 태평양도 최초로 베이징에 법률사무소의 중국 분사무소를 개설하였듯이 법률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은 막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뿐 아니라 사립탐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사립탐정의 국제적인 유대 관계는 전통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정보의 교환이나 업무 협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사립탐정이 정식으로 공인화 되어 적어도 국내법상 불법적인 집단이 아니어서 외국의 사립탐정들과 국제적인 상호교류가 가능하다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정보의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중국은 우리와 달리 변호사 이외의 다른 유사직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명칭조차 없다. 예를 들어, 사립탐정은 물론이고 법무사, 행정사 등과 같은 특수분야를 뜻하는 특정 직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법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모두 율사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법무 법인도 결국 중국에서는 율사사무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최근 국내의 법무사가 중국에서 율사라는 이름으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 법무사 사무소의 분소를 설치하면서 국내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 명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⁹¹⁾

중국 역시 WTO체제에 가입하고 나서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들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적인 모든 법집행기관에서는 외국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질 않으므로 외국기업은 자신들의 파트너가 될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립탐정 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얻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보험사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무역회사는 중국측 파트너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90) http://newsmaker.kyunghyang.com/politics_northkorea/n452a12.htm.

91) 한겨레신문, 2004. 11 .11.

중국은 세계사립탐정연합(World Association of Detectives)에 가입한 국가이지만 대부분의 중국 내의 사립탐정들은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으로 사립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사립탐정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가 1993년에 있었지만 임시조치로 사립탐정을 비롯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무소 설치를 무조건 금지시켰다.⁹²⁾ 중국도 오직 국가만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일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로 인하여 사립탐정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내의 사립탐정들은 비공식적으로 외국인이나 내국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귀국한 후에는 사기성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사립탐정들이 미국 보험회사를 위해 은밀히 수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사립탐정들은 중국도 역시 전직 공안, 즉 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소나 로펌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여 일부 사립탐정들은 중국내의 잠재적인 고객들을 위하여 지방 일간지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잠재적인 고객층에는 중국의 여성, 특히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는 기혼여성들도 이에 해당된다. 중국의 경제개혁으로 인해 중산층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중산층 기혼남성들이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그런 불륜 등의 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에는 중국에서 가족법 중에서 혼인생활과 관련된 법규정이 새로 채택되어 여성들이 이혼을 위한 소송을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⁹³⁾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의 광고에도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내용이 등장하며,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흥신소처럼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는 등의 이혼 소송에 관여하여 돈을 버는 사립탐정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개인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비밀스런 기록 등도 법적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92) Don't call me a Private Eye, Economist, 2002. 7.20, Vol.364. p.35.

93) Ebenda, p.35.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⁹⁴⁾ 이를 계기로 사립탐정이 공공장소에서는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의 주거지역이라도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수집한 사진이나 녹음, 기록 등도 증거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립탐정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사립탐정회사만 지난 10년 사이에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립탐정회사가 이미 중국시장에 뛰어 들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자국 제품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 사립탐정회사들도 중국 내에서 사립탐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대신 기업연구소(business reserch)나 자문회사(consultants)라는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도 외국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일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사립탐정에 대한 중국 내의 견해는 국가의 불간섭주의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사립탐정으로 인해 소수 부유층의 특권을 지키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예측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조만간 사립탐정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⁹⁵⁾ 만일 사립탐정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면 일반인들이 알고픈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아직 중국은 정부조직이나 공무원을 포함해서 상거래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부정행위 등 상당한 부패적인 요소가 사회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므로 이에 연류된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립탐정과 같은 제도는 나름대로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도 사립탐정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나, 기소, 재판과 같은 공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되어 공권력의 남용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아 매우 긍정적으로 사립탐정제도를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94) Ebenda, p.36.

95) Ebenda, p.36.

4. 일본의 사립탐정제도

일본은 경시청에서도 현재 전국적인 탐정사무소의 정확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3천개 정도의 탐정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⁹⁶⁾ 대부분의 탐정 또는 흥신소업은 주업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부업으로써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시로 폐업 등을 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는 더욱 힘든 형편이며 대체로 전화번호부나 명함 형태로 업체의 수를 추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탐정이나 흥신소라는 명칭보다는 탐정조사업이나 조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추세이다.⁹⁷⁾ 또한 나름대로 사단법인 형태를 갖추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유지하거나 협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교육과 훈련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탐정에 관한 면허증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각 협회는 상표등록을 하여 협회원 이외의 자가 사용하면 지적 재산권 침해로 보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탐정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관련 법규가 없이 자유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행정법규의 대상에 불과하다. 즉, 국가가 정식으로 공인하는 탐정자격시험이나 면허발급 제도도 없이 일반서비스업종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업종의 난립으로 인해 탐정 등이 취급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에 보고하는 등의 제재를 하거나 탐정업에 대한 국가면허제의 실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⁹⁸⁾

유일하게 일본 오사카의 경우는 부락민(전통적인 천민이라는 개념)이 결혼이나 취업 등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흥신소 등에 의해서 신원조사를 당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⁹⁹⁾ 의하여 탐정과 같은 조사업자에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1960년대까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부락민

96) 김태환, 강영숙, 프로탐정의 테크닉, 백산 출판사, 2004, 176면. ; 다른 견해로는 현재 일본의 탐정회사는 전국에 4천개 정도이며 동경에만 700여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속해 있는 탐정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97) <http://www.nittyokyo.or.jp/annai.htm>.

98) <http://www.yomiuri.co.jp/komachi/reader/200204/2002040600002.htm>.

99) 大阪府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関する條例.

의 차별문제이었는데 결혼하려는 상대방이나 기업의 신입사원이 부락민 출신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신원 뒷조사를 주로 흥신소나 사립탐정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1985년에 제정되었다. 법률이 아닌 조례의 형태이기 때문에 벌칙도 무겁지 않으며 탐정업은 신고만으로도 개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례에 의하면 흥신소나 탐정의 개념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인조사·법인조사 그 외 어떠한 명목의 조사를 불문하고 특정의 개인에 대한 신용·자산·경력소행 그 외의 개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는 영업을 뜻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 10만명 당 형사고소 당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1/45 수준에 불과하다.¹⁰⁰⁾ 이는 일본에서는 민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건일 경우 상당히 선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경찰의 경우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 때문에 민사상의 분쟁은 공적인 수사기관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직종은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립탐정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사립탐정제도가 나름대로 일본 사회에서 활성화되어서 가능하다고 보겠다.

특히 가족사이의 분쟁,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라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방을 찾아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일이다. 이러한 역할을 도와 줄 수 있는 직종은 변호사보다는 사립탐정의 업무로서 적절하다고 보겠다.¹⁰¹⁾ 그 외에도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기에 충분한 범죄혐의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충하는 작업도 역시 사립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나 수사기관 양쪽에 모두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사립탐정의 역할이 나름대로 사회 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100) 박상기 외 1인, 전계논문, 16면 참조 ; 인구 10만명 당 일본은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이 8.5명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려 1,057명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 나라가 고소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서 설명했듯이 민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민사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진다.

101) <http://www.tanteisha.net>.

업종의 활동을 굳이 국가가 간섭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겠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사립탐정의 부패, 업계의 난립,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미숙한 탐정 등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나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 도태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사립탐정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직종에 많이 관심을 보이므로 탐정 양성소나 탐정학교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일본 사회에서는 탐정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사립탐정들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사립탐정을 찾는 사람이 매년 2백5십만 정도이지만 제대로 해결책을 얻는 경우는 그 1/3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라 하겠다.¹⁰²⁾

현재 일본의 탐정들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체로 일본의 탐정은 그 영역에 따라 형사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탐정, 경제범죄를 주로 조사하는 경제탐정, 기업 내부의 분쟁이나 타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기업탐정, 보험사기 등을 조사하는 보험탐정, 백화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나 절도범을 검거하는 경비탐정 등으로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발전되고 있다.

일본탐정협회의 조사요금표에 의하면 조사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엔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¹⁰³⁾ 우리의 경우도 사립탐정 제도가 공인화 된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소득의 직종으로 자리 잡으리라 본다.

102) <http://www.nwkold.joongang.co.kr/200109/497/nw497019.htm>.

103) 김태환, 강영숙, 전개서, 205면. 도표 참조.

IV. 사립탐정제도도입과 현행 법률과의 문제점

1. 변호사법과의 충돌문제

1) 사립탐정업무와 변호사법의 관계

만일 우리사회에서 사립탐정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립탐정의 운영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기존 법률과 여러 분야에서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사립탐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하더라도 기존의 여러 실정법과 상충현상을 쉽게 제거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현행 변호사법이 규제하는 분야가 사립탐정이 주로 다루어야 할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1961. 10. 17. 법률 제751호로 신설)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활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화되었다. 예전의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입법 당시부터 변호사 아닌 자가 활동이 금지된 대상사건 및 금지대상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열거하였다.¹⁰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활동을 변호사가 아닌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설사 사립탐정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금지시킨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그대로 답습하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후속법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법(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됨)은 비변호사의 금지대상사건에 가사조정

104)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선거에 관한 소송이나 비송사건
2.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형사 피의사건 또는 탐사사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및 심판사건까지도 추가하였다. 그 후 변호사법은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벌칙에 관한 형이 인상 조정되었다. 더욱이 변호사법은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될 때에는 비변호사의 금지대상사건에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과 금지대상행위에도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등이 추가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입법 연혁으로 보거나 현행 법률의 해석상, 비변호사인 사립탐정의 주된 업무 영역이 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조사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법률과 관련된 어떠한 사무의 취급도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해당되어 사립탐정의 실제적 활동은 변호사법의 개정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2) 법률업무 개념의 문제점

그렇다면 사립탐정의 주된 업무영역의 법적 성격은 현행 변호사법 제 109조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999년 입법이 추진된 바 있는 공인탐정법¹⁰⁵⁾에 의하면 사립탐정이 행할 업무의 영역은 상당부분 변호사법에서 뜻하는 일반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라는 개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개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지만 입법취지·입법연혁·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⁰⁶⁾

105) 공인탐정법안 제3조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 사고, 손실, 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 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법정 등에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의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러한 규정에 의한다면 상당부분 변호사법은 물론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 와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사건의 주문.

그러나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규정은 그 의미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 적용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까다로워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¹⁰⁷⁾

이와 같은 기존의 변호사법에 의하면 유독 변호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어떤 형태이든지 타인의 법률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립탐정의 경우는 직업의 독자성을 부당하게 차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범죄나 위법, 부당행위의 조사라는 개념은 일단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의 수사권은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변호사법에서 뜻하는 수사사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¹⁰⁸⁾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며 보수를 대가로 손실조사의 의뢰를 받는다면 이는 법률사건에 대한 감정에 해당되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¹⁰⁹⁾

또한 변호사법에서 뜻하는 법률사건의 대리라는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사립탐정이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역시 이 조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107) 위의 같은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업법에 따라 중재하였으나 변호사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변호사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이다.

108)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의4(손해사정인 등의 업무)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9)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에 의하면, 개정 전의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감정'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를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감정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대리는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변호사가 따로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원고들을 대신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소송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면 역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¹¹⁰⁾

따라서 현행 변호사법과 사립탐정의 업무분야는 상호 상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상 기술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관련 법안을 구상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법률이 바로 변호사법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사립탐정제도의 문제점

1) 본법의 연원과 사립탐정업

우리나라에서 사립탐정의 업무와 비슷한 형태로서 일반인이 타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여 그 대가로 비용을 받는 업무는 대체로 1960년대 경제발전이라는 사회변혁기에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시대에도 나름대로 흥신소와 비슷한 信用告知業이라는 것이 있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일제시대 법령으로는 신용고지업취체규칙(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이 있었다.

이 법은 해방 후에도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어 오다가 5.16군사혁명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흥신업단속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비로소 일제시대 법령인 신용고지업법을 대체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신용고지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사람은 흥신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 때부터 우리 사회에 흥신소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흥신업단속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110) 대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 ; 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주민들에게 보수를 받고 하자의 색출 및 하자에 따른 손해액 산출업무를 실비로 대행하고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 법적 절차까지도 대행하여 준 경우로써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국민신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홍신소는 주로 경제적인 신용의 문제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¹¹¹⁾ 또한 당시의 홍신업은 오로지 법인에 의해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인설립 등기를 허가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홍신소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¹¹²⁾ 물론 홍신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기관은 관할 경찰서장이며 홍신소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홍신소는 당시 60년대에 사회적으로 부적격자로 알려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운영되면서 타인의 채권을 해결해 주거나 뒷조사를 대행하는 종류의 업무를 주로 하여 홍신소라는 명칭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사회에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홍신소에서는 보수를 받고 타인의 어려운 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는 조직 깡패나 해결사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경제적인 신용조사와는 상관없이 보수를 받고 각종 비합법적인 업무를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다 보니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홍신업단속법에서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신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정보원이나 탐정과 같은 유사용어는 사용을 금지하였고¹¹³⁾ 이러한 규정은 현재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그대로 답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60년대부터 홍신소라는 이름보다도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 국가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탐정이라는 개념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특수한 공무원이라는 어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인 직책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한편 홍신업단속법상의 각종 규제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홍신소라는 공식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111) 홍신업단속법(제정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8호) 제1조.

112) 홍신업단속법 제3조.

113) 홍신업단속법 제7조 : 홍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하여 업무상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8호 : 홍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사생활을 탐지하는 등의 편법적인 영업을 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부름센타라는 직종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자유업종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홍신업단속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단어 그대로 타인의 심부름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 하지만 심부름센타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신용 등을 비롯한 조사업무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조사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었다.

그 후 홍신업단속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39호로 제정된 신용조사업법으로 인하여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신설된 신용조사업법은 기존의 홍신업단속법과 기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신용조사업의 법인대표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업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을 뿐이다.¹¹⁴⁾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당시 묵시적이지만 사회에 실존하는 심부름센타나 홍신업무 등에서 타인의 소재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홍신업단속법은 없던 규정으로 신용조사업법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의하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 이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⁵⁾

하지만 본 규정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당시의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려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자체에 한정된다고 보여진다.¹¹⁶⁾ 따라서 판결의 취지는 일반인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금

114) 신용조사업법 제5조2항 ;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신문·통신업·출판업·부동산중개업·사법서사업·행정서사업·대금업 또는 결혼상담업(중매업을 포함한다)을 經營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15) 신용조사업법 제17조 5호.

116) 대판 1994. 8. 26 선고, 94도780 판결 ;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이 판결에서 적시하는 것은 누구라도 특정인의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위

지하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었다. 단지 신용조사업법 제10조 8호에서 조사원이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법취지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신용조사업법은 추후 입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이용법)로 전환되면서 동법 제26조에 의해 비로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조사원이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다.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단지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예컨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도 현행법상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의 소득표준을 분류코드에 의하면 탐정업이 직업으로써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정보이용법과 상호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¹¹⁷⁾ 또한 이러한 신용정보이용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탐정업을 하면서 이름은 컨설팅업 등으로 업종을 바꾸어 영업을 하는 실정이지만 재경원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명확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¹¹⁸⁾

신용정보이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예를 들어, 사립탐정, 공인탐정, 사설탐정 또는 영문으로 PI,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취지인데 이는 전혀 합리성이 결여된 입법이라 하겠다. 만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주거침입죄나 비밀침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되는 범죄로 처벌하면 그만이지 탐정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密偵이나 간첩과 같이 금기의 대상인 단어도 아닌데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199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11일에 신설된 경비업법의 시행

법행위라는 취지이지 일반인이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탐정을 업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더욱 아니라고 보여진다.

117) 이동영, 전계논문, 13면 ; 노호래,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점, 수사연구, 2001년 4월, 19면.

118) 이동영, 전계논문, 12면.

령 [별표1의2]에는 탐정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이라는 직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주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8년이 지난 후에 새로이 의도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입법의 실수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2002년에 개정된 경비업법이 새로 시행되기 전에는 특수경비업자는 다른 업종을 겸업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업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경비업자는 실제로 청소업대행이나 경호업 등을 겸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겸업금지조항은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되어¹¹⁹⁾, 경비와 관련된 업종이라면 겸업을 하여도 무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의 1항에서 [별표] 형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¹²⁰⁾ 별표에 의하면 경비관련업 중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 분야가 있으며 이에세는 세부적으로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경비업, 경보시스템서비스업, 소독및구충서비스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시설청소업 등과 함께 정식으로 탐정업도 포함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면 특수경비업에 종사하는 업자라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탐정업은 국내에서 2003년부터 법적으로 드디어 허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119) 경비업법 제7조 8항 ;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18>

120)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① 법 제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을 말한다.

2) 신용조사업법과 사립탐정의 관계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이용법)은 입법 연혁상 일제시대의 신용고지업취체규칙과 이를 계수한 흥신업단속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용조사업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후속 대체법률이다. 현대와 같은 신용사회에서 사람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이제는 국가가 독점하여 소유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여 어느 정도 개인이 이를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10여 차례에 걸친 조문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른 법률이다.

국내법 중에 유일하게 민간인이 비록 한정된 분야이지만 타인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이기도 하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분야의 사립탐정을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탐정이 사회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경제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사립탐정도 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겠다.

신용정보이용법에서 신용정보라는 개념은 상거래상의 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능력에 대한 정보를 뜻하며,¹²¹⁾ 이러한 신용정보의 한정된 개념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¹²²⁾ 현재 신용정보이용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회사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나 조회하여 주거나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신용조사업무까지도 병행이 가능하다.

본법에서 뜻하는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대부분 관공서의 민원업무를 통한 재산이나 납세정보조사를 의미한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이용자는 통상 전산망을 통해 DB정보에 접근, 이용하며 주로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¹²³⁾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12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22) 현재, 2003 헌마 740.

123) 금융감독원, 전계서, 128면 참조.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이다. 신용평가업무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업무이다.¹²⁴⁾ 따라서 신용정보업은 결국 위의 4가지 업무, 즉 신용조사, 신용조회, 신용평가, 채권추심업무를 뜻한다.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0억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⁵⁾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신용정보업자의 현황을 보면 국내에는 32개의 회사가 영업 중에 있다. 이들 회사는 허가받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즉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 신용평가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그 중 1-2개 또는 3-4개의 영역을 허가받아 영업하는 업소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¹²⁶⁾

앞으로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50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사립탐정이 독자적으로 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립탐정이 신용정보업자와 긴밀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신용정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본법에서 다루는 채권추심업무는 오로지 상법상의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만을 채권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기¹²⁷⁾ 때문에 상행위 이외의 개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채권을 추심 하게 되면 역시 처벌받게 된다.¹²⁸⁾

따라서 상행위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는 물론이고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추심 행위를 대행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률상 불법에 해당된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개인 사이의 채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 민사소송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심부름센터나 홍신소 등에 채권확보에

1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0호, 11호.

12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

126) 금융감독원, 전계서, 153-154면 참조.

1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0호 참조.

1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3항 9호 참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⁹⁾

2004년도에만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정도 늘어나 1만 4921건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¹³⁰⁾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사는 점차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굳이 상법상의 상행위에 따른 채권 이외의 채권추심이라 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일종의 불량 배들에 의해 채권추심행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부작위 입법에 의한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겠다.¹³¹⁾ 현재 신용정보이용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협회에서 제정한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가 있어서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외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사립탐정이나 그 밖의 다른 업종에서 대행할 수 있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채권추심방법의 위법성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립탐정과 같은 직종이 우리 사회에서 공인화 된다면 국가도 보다 합리적으로 사적인 조사업에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규제 및 통제가 용이할 것이며 채권채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129) 길거리의 현수막이나 포스터에는 빛을 대신 받아 준다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만 기재한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대행업무는 신용정보이용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중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중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발견 즉시 관할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화번호의 추적수사부터 하여야 한다.

130) 동아일보, 2005. 1. 12. ;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등으로 급증 추세이다.

131) 현행법으로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불안감 조성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사립탐정제도의 관계

1) 정보공개에의 필요성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사립탐정이나 변호사는 물론이고 공공주차장의 관리인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비용만 지불하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민사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신상까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 하에 보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 사립탐정의 입장에서는 각종 공문서나 자동차 등록자의 주소와 이름,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주소, 보험청구 등 각종 법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의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미국의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1966년에 제정되어 누구라도 연방정부의 기록에의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Access America에 접속하여 쉽게 정보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¹³²⁾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1976년 의회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으로 보완되어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또한 미국은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외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우리와는 달리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기관도 민간신분과 동일하게 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운전면허기록·차량등록·유권자명단·법원기록·자산기록이나 병원기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방대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필요한 자는 업무성격에 따라 한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¹³³⁾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의 모든 정보, 하다못해 십지지문까지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관·관리하면서 일반인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 유통이 철저히 봉쇄된 사회일수록 정보에 대한 비합법적인 밀거래가 성행할 수

132) 김택, 한국정보공개제도실태분석, 서울시립대학교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0, 4면 ; 이승주, 이병근, 김현진, 공저, 정보학개론, 법서출판사, 2002, 78면.

133) 강효훈, 외국의 사립탐정제도의 활용 사례와 법적 고찰, 수사연구, 2001년 4월, 24면 참조.

밖에 없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입은 자가 공권력의 도움으로 그 침해를 회복하는 절차나 법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정의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 자신의 손해를 직접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면 사회의 실질적인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개인이 정보로부터 부당하게 차단당하는 현상은 역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예상 못할 방법으로 침해될 가능성만 열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접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도청이나 무단촬영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¹³⁴⁾

미국의 경우는 최근 정부나 법집행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내의 각종 사립탐정협회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¹³⁵⁾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채무변제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나 수입명세 등을 알려고 해도 채무자 개인의 모든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⁶⁾ 이러한 현실에서는 설사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정보의 뒷거래나 탈법적인 수법을 동원하여야 겨우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고등학교의 졸업앨범의 뒷면에 나타난 졸업생의 주소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될 정도라면¹³⁷⁾ 사립탐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산업의 사회적 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

134)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의 부산 초원복집도청사건을 비롯하여 1995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도청 단자발견은 물론이고 개인에 의한 타인의 도청, 감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서적으로는 지영환, 국가와 도청, 도서출판 그린, 1999 ; 김형오, 엇뚝는 사람들, 도서출판 그린, 1999. 등이 있다.

135) Philip Hope, a.a.O., pp.20-21.

136) 주간동아, 2000년 1월 13일, 한국의 설록홈즈 들이 뿔다.

137) 대판 2000. 7. 28 선고, 99도6 :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같은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로 보인다.

국가가 특별한 목적도 없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입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소위 국가의 정보부패(information corruption)라고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¹³⁸⁾ 정보부패로 인하여 반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199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그 근본 취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운동을 위하여 행정청이 보유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민간인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행정부패척결이라는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시민들도 공유하게 된다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해외여행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하면서¹³⁹⁾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헌법 제37조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또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 위주의 정보독점이라는 사고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국민의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¹⁴⁰⁾ 특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할 권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를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¹⁴¹⁾ 독일헌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서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⁴²⁾

138) 김택, 전계서, 124면.

139) 경찰청 예규 제241호, 신원조사업무처리규정 참조.

140)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3전정신판, 박영사, 377면.

141) 대판, 1999, 9, 21. 선고 98두3426.

142) 김철수, 전계서, 377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¹⁴³⁾ 이러한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도 포함된다.¹⁴⁴⁾

사립탐정의 경우라면 주로 취급할 업무대상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업무의 처리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관련수사서류에 대한 열람권 행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할 여지가 있다. 사립탐정은 자신의 의뢰인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일 때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기록의 경우라면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판 개정 전에는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와 사립탐정이 협력관계에 있다면 변호인의 고유권이라 할 수 있는 기록열람 및 등사권에 의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¹⁴⁵⁾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수사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대체로 변호인의 권한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¹⁴⁶⁾ 사립탐정의 활동에 커다란 방해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엄수와 인권존중을 주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는 이상 사립탐정이 수사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다.

14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1항 참조. 한편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은 없으나 헌법상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의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144) 법률에 대한 입법취지를 비롯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김철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비밀보호법서설,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 보호, 1989, 12. 참조.

145) 형사소송법 제35조 및 형사소송법규칙 제23조.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30조에서는 피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써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에게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탐정이 소송관계서류 등에 접근하는 데는 현행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131면.

하지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상의 소송 및 수사관련 서류에 대한 규정이 정보공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¹⁴⁷⁾ 사립탐정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부합되게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소송에 대한 기록의 복사신청을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¹⁴⁸⁾

무엇보다도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국민의 재산과 관련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¹⁴⁹⁾ 또는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범죄예방이나 수사, 교정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¹⁵⁰⁾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국가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¹⁵¹⁾ 또한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사건기록의 경우도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권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¹⁵²⁾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수집하여

147)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148) 헌재 1989. 9. 4 선고, 88헌마22.

14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5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51) 대판 1999. 9. 21 선고, 98두3486.

152) 헌재(전원재판부)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또한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행정규칙에 의하여 관계 기관이 비밀로 지정한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뜻하는¹⁵³⁾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¹⁵⁴⁾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법의 대상인 국가가 보유한 정보라는 개념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폭넓게 해석한다면 사립탐정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제한은 상당히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법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취급한 규정(제9조 1항4호)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립탐정의 조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해당 조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개념은 해석 여하에 따라 사립탐정의 업무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수집에 결정적인 장애물로서의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위의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 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 고 판시 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개념을 매우 좁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15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54)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례 내용 참조.

4. 사립탐정제도와 형법과의 관계

1) 교사범, 종범, 공동정범의 문제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되어도 감독관청인 경찰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일부 업체에서는 부당하거나 범죄적 성격을 갖는 성질의 조사를 의뢰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¹⁵⁵⁾

그러한 불법한 사건을 의뢰 받아 조사한 사립탐정이 있다면 해당 범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의뢰인은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범죄의 실현을 지배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공동정범의 성립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뢰인이 교사한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거나 위법에 대한 인식 없이 의뢰를 받은 사립탐정만이 불법적으로 조사를 하였을 경우라면 의뢰인은 교사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⁵⁶⁾

따라서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경찰청에서 감독해야 할 일이 사립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과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사립탐정은 변호사협회처럼 자체적인 징계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한 내용의 사건을 의뢰 받거나 조사한 경우면 그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관직사칭의 문제

국가가 공인한 사립탐정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사립탐정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사칭하고 싶은 유혹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¹⁵⁷⁾

155) A.Peilert, a.a.O., S.277.

156)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4Aufl., 1988, S.622.

157) A.Peilert, a.a.O.,S.286. 우리에 비하여 독일 형법 제132조와 제132조a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하여 독일 사립탐정은 철저히 해당 조문과 OWiG(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지켜 나가야 한다. 특히 공직에 의해서만 행할 행위를 이러한 권한없는 사립탐정이 하였다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구성요건이 2중으로 되어 있어 자격을 사칭하고 다시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하는 매우 까다로운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탐정이 형사를 사칭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필요한 정보를 협박하여 얻어내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¹⁵⁸⁾ 또한 존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라도 역시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형법 제118조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립탐정제도가 공인화 된다면 관련법률을 통해 사립탐정의 공무원사칭행위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범죄 불고지에 대한 특별규정의 필요성

보안법 이외에 우리 형법체계에서는 특정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하여 독일 형법은 누구라도 공공의 위험성을 갖는 일정한 범위의 계획된 범죄가 범해질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시간에 관공서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¹⁵⁹⁾ 현재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설사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 관공서 등에 범죄를 고지할 특별한 의무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탐정제도가 공인화 된다면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민간인으로 보아 사립탐정의 면허를 발급할 때는 일반인과는 달리 범죄고지의무를 관련된 법률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범죄고지의무는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계획되고 있는 매우 중대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게 된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무가 신설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의뢰인을 위하여

158) 대판 1981. 9. 8, 81도1955 ; 자신의 체권을 받아 낼 생각으로 합동수사반원이라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형법 제118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59) StGB § 138.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립탐정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별도의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자신의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을 알았을 경우인데, 당연히 사립탐정으로서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A.Peilert, a.a.O., S. 291.

수행하는 업무와 고지해야 할 범죄로 지켜질 이익이 서로 상충하였을 경우라 하겠다. 이 점은 의무의 충돌을 비롯한 형법상의 기존 이론과 판례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주거침입죄와의 문제점

헌법상의 주거의 자유(제16조)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형법상의 범죄로는 주거침입죄(제319조 1항)와 퇴거불응죄(제319조 2항), 신체주거수색죄(제321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상되는 사립탐정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앞으로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거권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적법한 다른 행위를 가장하고 출입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거나 그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지 여부이다.

이 점에 관해 반대 견해도 있지만 독일의 유력한 학설 중에는 사립탐정이 일단 주거권자(Hausrechtsinhaber)에게 어떤 형태이든지 허락을 받아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은 배제된다고 보고 있다.¹⁶⁰⁾

우리의 경우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 이라고 본다면 본죄의 성립여부는 전적으로 출입에 대해 거주나 관리자의 승낙에 달려 있게 되어 설사 출입자가 진의나 목적을 숨기고 출입해도 승낙이 있는 이상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¹⁶¹⁾ 즉,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여 출입이 허락된 경우는 출입을 허락한 동기에는 비록 착오가 있었지만 출입 자체에 대한 의사표시는 존재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이론을 악용하여 사립탐정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우리 판례가 이러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물론 강간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하려는 강간범을 남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어준

160) K. Bernsmann, Tatbestandsprobleme des Hausfriedensbruchs(2.teil), jura 1981, S.403. 사립탐정의 이러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161)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306면 :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308면.

경우라면 출입자체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없다고 보아 본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¹⁶²⁾ 있어도 아파트 관리인을 가장하고 출입한 사립탐정의 경우라면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5) 프라이버시침해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사립탐정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다. 정보사회에서 대량의 정보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고 관리되는 현상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처하기에 힘든 면도 있다.

헌법에서 열거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권은 주거의 자유(제16조) 이외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계된 법률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제307조 이하 및 민법 제751조의 명예훼손),¹⁶³⁾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제316조),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의 일부 조항이 구체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경비회사 등에서는 고도로 정밀한 도청장치나 도청예방장치, 추적장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사립탐정 등이 간통죄의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감시, 도청 등이 행해진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불법에 해당된다.¹⁶⁴⁾

경찰의 경우도 현재 수사상 필요하여 도청 등을 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한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¹⁶⁵⁾ 검사를 통해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162) 대판 2003. 5. 30, 2003도1256.

163) 성락인, 헌법학, 법문사, 2001, 434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명예훼손과 인격권보호라는 점에서 보호법익상 동일한 점이 있다.

164) 성락인, 전게서, 438면 주)3에 의하면 사실탐정이 산업재해의 원인조사를 위해 부부의 동태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행위도 사생활침해로 금지될 행위유형으로 보고 있다.

165) 동법 제5조 1항에서 통신제한조치는 다음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

검사는 다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제6조 2항)를 거쳐야 가능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사립탐정 활동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도청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는 이상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면허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사립탐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어떠한 논리를 적용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생길 수 없다.¹⁶⁶⁾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전화에 의한 협박죄의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발신장소를 역탐지 하는 것이나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¹⁶⁷⁾

따라서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분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증거수집방법이나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능력의 범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차라리 해당되지 않는 형법상의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했으리라 본다. 즉, 법원의 허가만 있다면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도청 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66) Alain Rousseau, Valeur juridique, utilite et utilisation du rapport de detective, 2000.11.16. 출처, <http://www.net-iris.com/publication/author/document.php3document=8>.

(프랑스어 번역을 의뢰하여 참조 함) 프랑스의 사립탐정은 당연히 사법기관의 보조자는 아니지만 법률적 범위 안에서 권리와 관계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사립탐정의 보고서나 합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나 서류는 그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제3의 증거가 첨부되었다면 판사의 평가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탐정의 보고서는 사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는 없으며 이를 근거로 상소결정이 이루어졌던 1962년 11월 7일의 판결에서 그러한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1974년 11월13일 판결문에서는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보고서의 가치와 효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판사의 최고권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된 사립탐정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1977년 10월 12일의 판결 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고용된 사립탐정이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면서 불법적으로 감시하여 얻어내 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67) 김철수, 전게서, 551면 참조.

V. 사립탐정의 자격과 공인의 문제

1. 현행 자격기본법과 사립탐정제도

독일의 경우도 일반적인 다른 직업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하나 사립탐정이나 흥신업과 같은 업종은 신고를 하여 국가나 주 정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의 영업법이 특정 직종에 따라 각기 요구하는 상세한 세부규정들이¹⁶⁸⁾ 사립탐정의 경우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¹⁶⁹⁾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 정부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가 발급된 사립탐정에 대해서 주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 발급과정에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주도 있는 반면 단순히 신고만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면허가 발급되는 주도 있다. 일본은 사립탐정을 일종의 자유업으로 보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업체의 난립과 악덕업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탐정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몇몇 업체들이 모여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¹⁷⁰⁾

우리의 경우 사립탐정제도를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인정한다면 어떤 형태로 사립탐정을 공인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격제도가 있으므로 사립탐정도 일종의 공인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자격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취급

168) 예를 들어, 경비업의 경우는 영업법과 경비업법시행령 등에서 경비업에 종사할 경비원들의 교육절차, 교육대상 과목, 영업실행에 부과할 의무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준태, 독일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3년 제2호, 133-137면 참조.

169) A.Peilert, a.a.O., S.254.

170) 예를 들어, 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의 경우는 1988년 임의로 유사한 업체 4-5개가 통합하여 창설하여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며, 일본탐정조사협회라는 이름의 업체는 명칭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여 지적재산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로 설립된 협회 내에서 자체적인 시험이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사립탐정이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본다면 이에 따라 당연히 시험 등의 검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¹⁷¹⁾

사립탐정의 자격 문제에 관하여 현행법률인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가급적 국가자격으로 신설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현행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특정의 국가자격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자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⁷²⁾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경찰청장에게 사립탐정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본다면 국가자격을 신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차선책으로는 사립탐정을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민간자격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⁷³⁾ 사립탐정이 민간자격으로 될 경우는 경찰청장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협의를 거쳐 추후 국가의 공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될 것이다. 즉 공인된 민간자격으로서의 사립탐정을 신설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청이 사립탐정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공개적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립탐정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 된 바 있다.¹⁷⁴⁾ 다만 법률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탐정이나 조사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없을 뿐이지 사립탐정을 의미하는 유사한 단어로 실제로 상당수의 업체나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¹⁷⁵⁾

171)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재 영업중인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종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사립탐정의 자격중제도나 검증시험제도가 생긴다면 자신들의 이러한 불법영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2) 자격기본법 제6조, 제7조 참조.

173) 자격기본법 제15조, 제16조 참조.

174) 중앙일보, 1998.12.19 ; 중앙일보, 2000.5.22 ; 굿데이신문, 2003.11.17 ; 매일경제, 2004.2.6 ; 일요시사, 2002. 8.13 ; 주간동아, 2001.13 ; 주간동아, 2001.11.15 ; 조선일보 2004.11.5 ; 헤럴드경제, 2004.9.10.

더 나아가 일부 협회에서는 사립탐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민간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들을 자체적으로 선발·교육하여 자신들만의 면허를 교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방관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기존의 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공인자격의 신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진다.¹⁷⁶⁾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민간자격증으로서 부동산권리분석사와 부동산경매사의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전달한 바 있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경매나 권리분석도 법률행위인 이상 전문법률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변호사의 직무인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법률사무 또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타 국가공인자격과 업무영역에 중복현상을 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탐정이 정식으로 국가의 공인을 받는 공인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로 신설 자격의 공인을 반대하는 변호사협회와도 사전에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사립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확실한 한계를 제시하고 사립탐정은 결코 변호사가 담당하는 법률사무와는 별개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임을 주지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¹⁷⁷⁾

사립탐정과는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는 당연히 부동산중개업까지도 포함된다는 입장이기¹⁷⁸⁾ 때문에 만일 민·

175) 인터넷에 서로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립탐정의 기능을 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국내사이트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http://www.cpi.or.kr	http://www.realdoum.com	http://www.snf.re.kr
http://www.fkpi.or.kr	http://www.riskfree119.com	http://www.detective.co.kr
http://www.piworld.org	http://www.search-one.co.kr	http://www.ok114.rgro.net
http://simbureau.net	http://ikukjea.com	

176) 대한변협신문 110호, 2004, 6,21.

177) 따라서 사립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2조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한다면 법무사는 서류의 작성이나 서류제출의 대행, 신청대리 라는 규정을 강조하여 어떠한 형태이든지 변호사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178) 대한변협신문 111호, 2004.7.5. 200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모 변호사가 제기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거친 후에 대법원에 상고

형사소송절차나 수사단계에서 사립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개입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어떠한 형태이든지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러한 업무도 역시 변호사의 업무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변호사 수의 양적인 증가로 변호사들도 기존의 변론업무 이외에 비송무분야로의 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공인탐정제도의 신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협력을 구하여 할 단체는 변호사협회라 하겠다.

2. 입법예고된 자격기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6월 5일 자격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동기 중에는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자격취득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시키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각종 직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 표준(KSS)이 마련될 것이라고 입법예고 되었으며,¹⁷⁹⁾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4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자격 취득시험을 단계적으로 직무능력 표준이 적용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만 국가 자격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¹⁸⁰⁾

더구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외가 없는 이상 민간자격의 신설도 극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부동산중개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이다.

179)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이를 자격 검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술사·건축사·공인회계사·미용사·자동차정비사 등 국가기술자격 637개 등 모두 1400여개의 자격 취득 시험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직무능력 표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180)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8월 17일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으며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가 바로 사립탐정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립탐정의 공인문제는 추후 2-3년내에 실시될 개정자격기본법의 운영방향과 함께 연계하여 고려할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립탐정업도 국민의 생명 등에 관련 있는 직종으로 분류된다면 현행 자격기본법을 바탕으로 사립탐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일부 단체에서 자격기본법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사립탐정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수여한다면 이제는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⁸¹⁾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를 새로 정해 앞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거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민간자격 분야로 되어 있는 침술사를 제한분야에 포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사립탐정이라는 직종의 공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하여 침술사가 제한 받은 것 이상으로 상당한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예고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안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시행되던 각종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종에 대한 대규모의 정비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고 관련 법령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아직 사회적인 합의도 도출되어 있지 않는 사립탐정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은 개정자격기본법이 추진하려는 방향과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개정 자격기본법률안에 의하면 현행법상 지금은 민간자격을 개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¹⁸²⁾ 앞으로는 법인이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하기로 예고하였다.¹⁸³⁾ 만일

181)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처벌규정도 마련해 앞으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공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82)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제16조에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거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의 신설은 자유이지만 이를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공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사립탐정처럼 치안과 관련 있는 분야의 경우는 개발원장과 경찰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사립탐정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과

민간자격신청을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할 경우 사립탐정의 경우는 현재 전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공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관련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친 자에 한해서 사립탐정의 공인된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사립탐정의 교육을 대학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배타적으로 담당한다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립탐정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사립탐정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1세기 이상 뒤쳐졌다 하더라도 정규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사립탐정의 자격을 수여하여 사회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그 성장속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립탐정의 자격과 국가공인화에 대한 방안

사립탐정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개인적으로 정보의 수집이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단속이나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변형된 형태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사립탐정 등의 사회적 필요성과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법률생활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립탐정제도를 양성화하고 더 나아가 자격제도의 틀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렇게 하여야만 불법적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채권추심대행업 등이 음성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거나 각종 음성적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사립탐정제도를 건전하게 우리사회에 정착

정을 신설하거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공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극도의 개인적인 영리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183) 개정 지적기본법 제20조 2항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공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도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본다.

시킴을 위해서는 공인화된 직업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겠다. 즉 사립탐정이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업으로 할 수 있는 공인탐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률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첫째, 사립탐정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시험을 거쳐 발급하는 면허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즉 경찰청장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립탐정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공인탐정의 자격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사립탐정제도는 정부에 의해 국가자격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¹⁸⁴⁾과 마찬가지로 사립탐정의 경우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관련학과의 범위 등은 추후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 로스쿨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학과나 경찰행정학과 등을 이에 포함시킨다면 법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자원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아직 사립탐정학과가 없는 이상 관련 학과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현행 사법시험법 제5조 응시자격을 참조하여¹⁸⁵⁾ 최소한의

184) 의료법 제7조 (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185) 사법시험법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 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01.01]

법률과목과 수사학, 범죄학 등을 대학에서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사립탐정을 합법화하거나 또는 자격제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사립탐정의 업무는 비록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공익관련성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종에 종사할 자격은 엄격한 국가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자격을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자격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국가자격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사립탐정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자격기본법률안 제12조 1항 3호에 규정한 치안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¹⁸⁶⁾

국가자격으로 신설되는 직종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회가 역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사립탐정을 국가자격으로 신설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가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법무사¹⁸⁷⁾, 세무사¹⁸⁸⁾, 변리사¹⁸⁹⁾, 경비지도사¹⁹⁰⁾와 마찬가지로 사립탐정도 관련

186) 개정자격기본법률안 제12조(국가자격 신설 등) 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으로 운영이 곤란한 분야
3. 국방, 치안, 교육, 국가 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4. 제2조 제4호의 자격

② 국가는 제21조에 의해 공인받은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의 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 국가자격의 신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7) 법무사법 제4조 (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88)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1999.12.3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89) 변리사법 제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교육이나 연수를 거친 후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입법형식으로 1999년에 제시된 가칭 공인탐정법안이 바로 이러한 체계에 따라 공인탐정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다. 사립탐정의 경우도 다른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는 유사한 직종, 즉 법무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 요건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형식은 공인탐정의 등록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에 부담이 너무 많은 단점이 있다. 공인탐정에 대한 징계, 감독을 포함한 공인탐정 시험실시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경찰청에 부여되어 있다면 만일 공인탐정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비난도 직접적으로 경찰청에 몰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비롯하여 특정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자유를 학력 등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단순히 자격시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누구든지 대학이나 그 밖의 교육기관, 혹은 독학으로 공부하여 소정의 검증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공인탐정의 면허를 수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국가 외의 민간단체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본의 사립탐정은 대부분 이러한 형식으로 민간협회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일종의 자유업으로 방치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의 창출을 포함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 사립탐정은 그 성격상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할 정도의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부합된다고 보겠다. 또한 민간자격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협회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더구나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직종 등에 종사하던 인적자원이 스스로 협회를 구

3. 삭제<2000.1.28>

- 190) 경비업법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하여 사립탐정자격증을 남발한다면 그들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가장 최악의 경우로 각종 불법을 자행한 일부 악덕 심부름센타나 채권회수대행업체까지 우리사회에서 정식으로 직업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될 뿐이다.

넷째, 사립탐정을 민간자격으로 신설한 다음 이를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립탐정제도를 공인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의 사회적 기능 및 그 성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문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립탐정이란 직종이 입법예고된 개정자격기본법률안 제20조에서 뜻하는 민간자격으로 신설할 수 없는 분야로써 예시된 내용¹⁹¹⁾과 매우 일치한다는 난점이 있다.

우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기존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조차 금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금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에 당연히 해당되다, 또한 사립탐정은 그 성격상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존의 모든 범죄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범죄와 관련된 조사 등의 직무를 개인의 업으로 할 경우는 당연히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격”으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탐정을 국가공인을 전제로 한 민간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사립탐정의 업무범위가 개정자격기본법 제20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립탐정의 자격을 대학 등의 정규 고등교육기관과 연관시켜 대학이 사립탐정이라는 민간자격의 신설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민간자격으로의 사립탐정이 사회적 공신력과 통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기관이 주체가 된 민간자격은 쉽게

191) 개정자격기본법률안 제20조(민간자격의 신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이 금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자격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
3.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격
4. 기타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할 여지가 있게 된다. 또한 사립탐정과 관련되어 법학, 행정학, 경찰학, 범죄학, 법의학, 수사학, 심리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접학문도 병행하여 발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탐정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학문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겠다.

4.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1) 공인탐정법률의 초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우리나라와 무역 등의 교역 및 민간교류가 빈번한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이 사립탐정 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탐정에 대한 성문 법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 등은 사립탐정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라면 각 주마다 성문화된 사립탐정 법률이 있어서 탐정의 자격이나 요건, 업무의 범위 등이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립탐정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나름대로의 사립탐정과 관련된 법률안을 1999년에 하순봉의원에 의해 마련된 바 있다.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원입법형식으로 가안이 준비되어 앞으로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본 법안은 만들어진지 이미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법안의 내용도 이를 소개하는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일단 최초로 공인탐정법률초안(약칭하여 공인탐정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다른 다른 단체나 개인이 구상하고 있는 법률안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할 여지가 없다는 취약점은 감수해야 할 문제라 보겠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일본의 경우도 사립탐정에 관한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법적 검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법률 중에는 특정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 취급하는 사무에 종사할 수 있

는 배타적인 업종에 관한 법률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의 형식적인 측면은 그러한 법률과 비교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이 취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참고하거나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탐정법안의 몇몇 조문은 시행령의 형식으로 위임할 여지가 있는 너무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를 법률안에 포함시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타 법률과 비교하여 조문이 방대한 편이라 하겠다.¹⁹²⁾

우선 공인탐정법안의 전반적인 구조를 법무사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1장 총칙(법무사법도 동일), 제2장 공인탐정의 등록(법무사법은 법무사의 등록) 제3장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법무사법은 법무사의 권리의무), 제4장 공인탐정합동법인(법무사법은 법무사합동법인), 제5장 공인탐정협회(법무사법은 제6장과 7장에서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를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징계 (법무사법은 제5장이 징계) 제7장 보칙(법무사법은 제8장이 보칙) 제8장 벌칙(법무사법은 제9장이 벌칙), 부칙 순으로 되어 있다.

결국 공인탐정법안이 법무사법과 입법 형식상 다른 점은 공인탐정은 하나의 공인탐정 협회를 두는 것이고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로 2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무사법에 장이 하나 더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새롭게 창설될 직업이자 더 나아가 국민의 법률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채 가안이 일방적으로 준비된 결과라 하겠다.

2) 공인탐정법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192) 예를들어, 관세사법은 32개 조문, 변리사법은 27개 조문, 세무사법은 24개 조문, 공인노무사법은 3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하여 공인탐정법률안은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각 조에 해당하는 세부 항이 너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인탐정이나 사립탐정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형성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격상 시행령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상당수 법률의 조문형식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열거하고 있는 입법형식은 미국의 각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탐정법률(Private Detective Statutes)과 유사하다. 또한 법률안의 기본적인 구조와 순서는 우리의 법무사법(76개 조문으로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겠다.

본 법안의 구조는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업무, 제4조 공인탐정 아닌 자의 단속, 제5조 자격, 제6조 공인탐정자격시험, 제7조 결격사유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장 공인탐정의 등록, 제3장 공인탐정의 권리의무, 제4장 공인탐정합동법인, 제5장 공인탐정협회, 제6장 징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은 범무사법과 비교하여 공인탐정이라는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순서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절차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굳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제1장 총칙으로 이는 공인탐정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골격을 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 하겠다.

① 공인탐정법의 목적

제1조¹⁹³⁾ 목적 부분을 살펴보면 공인탐정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가진 직업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법률생활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일종의 심부름센타를 연상하는 문장으로써 본법의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목적에 관한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이 법은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와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인탐정의 정의

제2조¹⁹⁴⁾ 정의 부분은 공인탐정에 대해 굳이 정의를 하지 않아도 다음에 규정한 업무, 자격 등의 내용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의라는 제목보다는 공

193) 공인탐정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 공인탐정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인탐정”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인탐정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공인탐정은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켜 건전한 사회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설된 직종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③ 공인탐정의 업무범위

제3조¹⁹⁵⁾ 업무 규정은 변호사법을 비롯한 다른 유사 업종과의 다름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부분이다. 업무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여도 차후에 업무의 정당성여부의 논란이 발생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탐정이 행방불명자나 미아의 소재확인 작업을 의뢰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제3조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어 잘못하면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범죄조사를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행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인 검사의 수사권 조항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본 조항은 보다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법안에 열거한 내용은 미국의 사립탐정제도부분에서 소개하였듯이 대부분의 미국 각주의 사립탐정 법안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유사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조항의 업무는 보다 신축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 불법행위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그 침해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조사

195) 공인탐정법안 제3조(업무)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조사 및 위법·부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법정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의 조사

2. 행방불명자, 가출인 또는 미아에 대한 소재확인 조사
3.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한 소유자,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소재조사
4. 수사, 재판, 행정심판, 중재, 화해 등에 사용될 증거에 대한 조사 및 관계인의 소재 조사.
5. 개인 또는 법인 및 특정집단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벌 칙

제4조¹⁹⁶⁾ 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단속 부분은 범무사법과 동일하게 총칙에 있지만 그 성격상 총칙이 아닌 벌칙부분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⑤ 공인탐정의 자격요건

공인탐정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공인탐정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⁹⁷⁾ 그러나 제5조는 필요 없는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6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2항에서 공인탐정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 공인탐정은 일반인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매우

196) 공인탐정법 제4조(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단속)

- ①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 ②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7) 제5조(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탐정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공인탐정자격시험)

- ① 공인탐정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탐정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검찰청직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정보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이상인 자
 2. 제22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강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공인탐정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나마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특정 직종의 자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열거한 국내의 어떤 법률에 비교하더라도 너무나 고학력자이거나 특수신분에 있던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위험적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즉 경찰에서 수사업무를 5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출신이나 법대나 경찰행정학과 교수신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공인탐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¹⁹⁸⁾ 탐정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충분히 조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도의 시험으로 문호를 개방할 문제이지 폐쇄적으로 특수직에 있던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하겠다. 법무사법의 경우는 2003년 2월 26일 일부 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마약 수사부서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법무사자격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1차 법무사시험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체한 바 있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는 세무사, 변리사를 비롯하여 약 30여종의 법률과 관련된 직종에서 관련 협회 등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한 공인탐정의 업무가 형사사건과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공인탐정의 자격을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을 비롯하여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권리(형사소송법 제35조)를 포함하여 법정에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합동공인탐정사무소 등을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부여받을 자에 변호사가 들어간다면 인증된 경찰전문수사관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탐정의 업무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찰수사관이 행하는 직무를 개인이 보수를 받고 행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공인탐

198) 이동영, 21세기 공인탐정이 뜬다, 굿인포메이션, 1999, 63면 : 공인탐정은 결국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될 것이므로 특수직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일반인은 그 경력에 의해 실질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날 것이므로 굳이 그러한 경력소유자만을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인탐정법안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는 1차 시험 정도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이 행할 업무의 범위는 경찰수사관이 일상적인 업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현재 경찰수사체제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이제는 수사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그 전문적인 자격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¹⁹⁹⁾ 이러한 인 증은 어떠한 사립탐정의 공인된 자격보다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인탐정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제5조와 제6조인 공인탐정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공인탐정의 자격을 가진다.

1. 제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탐정으로 등록한 자
3. 경찰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고 퇴직한 자

⑥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제7조는 공인탐정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²⁰⁰⁾ 이러한 결격사유는 자격을 필요로

199)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435호)에 의거하여 2004년 12월 8일자로 수사경과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수사관의 자질이나 교육 등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동 규칙 제4조 2항에 의하면 수사경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경력 2년 이상 있어야 하고 이렇게 선발된 자는 동 규칙 제6조 2항에 의해 수사경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9조 1항에 따르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3년 이상 전문수사 분야에서 근무하였다면 분야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경찰경력에 분야별 수사전문가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증 받은 수사경찰관이라면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퇴직과 함께 자동적으로 공인탐정자격이 부여되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또한 인증 받은 퇴직 전문수사관들의 수사경력과 경험이 사립탐정제도의 전반적인 업무발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탐정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하는 직종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만 공인탐정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탐정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폭력단체와 연관된 범죄의 경력이 있거나 상습적인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인탐정의 자격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특정한 범죄의 전과 경력만으로 직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나 평등권(헌법 제11조 1항)에 반할 우려도 있지만 탐정이라는 직업의 사회 공익성을 중시하여 이러한 제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⁰¹⁾

더구나 공인탐정의 임무 중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쉽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행사할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격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서 폭력을 포함한 불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공인된 탐정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폭력전과라는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크다고 보겠다. 특히 기존의 불법영업을 자행한 심부름센터 등에 잔존하는 폭력전과자들을 신설되는 공인탐정제도에서 퇴출시키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심부름센터나 범죄를 유인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흉악한 범죄를 도모하거나 자행한 사례가 급증하여 경찰에서는 대폭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는데²⁰²⁾ 대체로 폭력전과자들이 상당히 연류되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7.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 岩田康弘, 警備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日本 警察學論叢 第56卷5号, 2003年 5月, 19면 이하 참조 ; 사립탐정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의 경우 2003년 개정된 경비업법의 시행시 경비원의 자격에는 조직폭력단체에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조문이 새로 추가된 바 있다. 여기서 관련이 있다라는 개념에는 폭력전과는 물론이고 폭력단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 중앙일보 2004년 3월 2일 : 경찰청은 2일 "살인·납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심부름 센터에 대해 지난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국에서 302건에 업자와 의뢰인 등 511명을 검거해 5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적발된 심부름센터의 주요 불법 행위는 폭력배들을 동원해 돈을 빼앗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99건. 207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84건. 115명), 불륜 행위 등을 추적하는 사생활 침해(61건. 92명), 불법 도청(4건. 8명), 청부살인(2건. 8명) 등이었다.

VI. 결 론

①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 분쟁에 연루된 개인의 정당한 법익들이 시기적절하게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는 없다. 또한 수사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권력은 때에 따라서는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이에 반사적으로 침해당하는 개인의 법익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가 당연히 사회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²⁰³⁾

더구나 범죄 수사기관이나 범죄와 관련된 법률들이 갖는 주된 관심방향은 국가와 범죄인의 대결구도라는 시각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 피해자와 범죄인 또는 국가와 피해자의 관계는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수사권이나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나름대로 자력을 사용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는 더 이상 침묵만 할 수는 없다고 보겠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법치국가는 공권력 이외에 사적인 안전장치가 사회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써 무시해 오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의 공권력과 사적인 안전장치는 서로 상호협조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다. 민간경비분야도 그러한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공적인 수사권력은 범죄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비롯하여 개인의 범죄피해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시민들에게 아무리 충분히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범죄수사 전문가의 조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굳이 국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다.

개인에게 닥칠 모든 형태의 범죄피해와 분쟁 가능성에 대한 예방과 수사를 오로지 국

203) Christoph Gusy, Polizei und private Sicherheitsdienste im öffentlichen Raum, VerwArch.92(2001), S. 344-345.

가 공권력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사립탐정제도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특수한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유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립탐정제도가 사회에 이바지할 발전적 영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탐정제도의 건설적 방향에서의 수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여론을 서서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발전추세는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법률가들이 법과대학에서 습득한 법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형태의 예상 못한 새로운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법조계가 앞장서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조계도 다원화되고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야 하듯이 사립탐정의 개념도 오로지 형사사건과 관계되어 사적으로 조사하는 직업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회가 분야별로 전문화되면 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들은 바로 해당 전문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해당 분야에서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급인력들 중에 일부라도 분야별로 사립탐정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여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건축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만일 건축분야만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사립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건축과 관련된 각종 사회갈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발전이 될 것으로 본다.

② 한편 사립탐정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립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법률안은 보다 신중하게 충분한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 작성하여도 늦지 않다고 보겠다. 아직도 일반인들의 법의식 속에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홍신소 또는 심부름센타, 도청, 미행, 사생활침해와 같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립탐정이라는 용어를 직접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사립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특수한 분야에서부터 사립탐정제도를 허용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경제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소위 기업탐정, 의료사고전문탐정, 보험수사, 감식, 해외 도피사범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립탐정의 활동을 공인하고 그 범위를 점차로 확장하여 점차적으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탐정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③ 사립탐정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구체적인 특정 법규의 위반이 없는 이상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립탐정의 활동을 또한 적극적으로 공인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사립탐정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독점적으로 탐정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할 시기라고 본다. 탐정업을 특수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독점적으로 운영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던 심부름센타나 홍신소, 채권회수대행업자 등이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필자의 면담결과 현재 심부름센타 등의 종사자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사립탐정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자격화, 공인화되는 것이었다.

사립탐정으로 공인화하는 과정에서 우선 고려할 점이 사립탐정을 공익적 성격을 갖는 의사나 간호사 자격처럼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국가자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 하겠다. 사립탐정은 그 성격상 고도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의료인의 자격취득과 거의 동일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보겠다.

물론 이러한 국가자격 이외에도 법무사나 세무사와 같이 특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받는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립탐정제도를 공인화하는 경우도 고려할 여지가 이차적으로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전문직과는 달리 사립탐정의 경우는 범죄수사에 대한 고도의 노하우와 경험 없이는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분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경찰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것이고 그 외에 소수의 사법경찰관이 있는 기관의 전직 수사관만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경찰 체제에서 3년 이상 수사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수사인증 소유자에게 퇴직과 함께 사립탐정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하더라도 다른 직종과는 달리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련된 위헌논쟁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다.

경찰수사관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한 수사기법과 능력이 퇴직과 함께 사장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공인된 사립탐정분야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시민에 대한 봉사는 물론이고 치안업무의 협조자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립탐정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하여 공인탐정제도로 된다 하더라도 그 자격에는 관련 법률이 정한 공인탐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경찰의 전문수사관 출신에게도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④ 끝으로 사립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공인화 되어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현직 수사경찰의 시각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집단이 자신들이 집행하는 수사를 방해나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직 수사경찰의 업무와 사립탐정은 업무의 성격상 중복되는 점도 당연히 존재하나 상호 보완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사립탐정제도를 인식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국내서 및 논문

1. 박상기 외 1인,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2. 초인섭 외 2인, 고소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 임준태, 이동영, 탐정학개론, 좋은세상, 2003.
4. 김태환, 김영숙, 프로탐정의 테크닉, 백산출판사, 2004.
5. 볼프 쉐겐, 서정범역,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8.
6. 김택, 한국정보공개제도실태분석, 서울시립대학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3.
7. 정진환, 미국경찰론, 양영각, 1994.
8. 이백철, 박병식,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1998.
9. 박기륜, 국제범죄론, 비번캐릭터, 2004.
10. 이승주 외4인, 정보학개론, 법서출판사, 2002.
11. 이동영,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수사연구, 2001년 4월
12. 이동영, 21세기 고인탐정이 된다, 굿인포메이션, 1999.
13. 노호래,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점, 수사연구, 2001년 4월.
14. 강효훈, 외국의 사설탐정제도의 활용사례와 법적고찰, 수사연구, 2002년 4월.
15. 황운하,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수사연구, 2002년 4월.
1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4.
1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4.
17.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9. 성락인, 헌법학, 법문사, 2001.
20. 배종대, 형법각론 제5판, 홍문사, 2003.
2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22. 신현중, 한국의 오이시디가입과 대응과제, <http://yu.ac.kr/~shinhj/html/ra6.htm>.

23. 경찰청, 경찰백서, 2004.
24. 강효훈, 탐정의 세계, 시큐리티월드, 2000년 10월
25. 안철경, 보험사기자료의 계량화를 통한 손보사의 SIU기능 활성화 안,
http://www.assuranceforum.com/InsFraud/InsFraud_1/
26. 임준태, 독일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3년 제2호.
27.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및 수사참고자료.

외국서 및 논문

1. K. Bernsmann, Tatbestandsprobleme des Hausfriedensbruchs(2.teil), jura 1981
2. Alain Rousseau, Valeur juridique, utilite et utilisation du rapport de detective,
<http://www.net-iris.com/publication/author/document.php3document=8>.
3. Christoph Gusy, Polizei und private Sicherheitsdienste im öffentlichen Raum, VerwArch.92(2001)
4. Jeff Barge, Thanks partly to Lawyers, PI income soars, ABA Journal, 1994.
5. Larry Smith, How Attorneys and Investigators Work Together in the Post-Enron Environment, Of Counsel, April. 2004.
6. Philip Hope, Alberta's Proposed Privacy Act Worries PIS, Western Report, 1998, 9. 28, Vol.25,
7. Andreas Peilert, Das Recht des Auskunftfei und Detekteigewerbes, Duncker & Humbolt, Berlin, 1996.
8. Entwicklung des Detektivgewerbes in Deutschland. september 2003/Josef Riehl.
http://www.bdd.de/Download/EntwicklungStandMai2003_Homepage.pdf.
9. Kocks, Geschichte der Detektive in Deutschland, ZAD-studie, Geldern Ausgabe 4. 1990.

10. G. Neumann, Die Zusammenarbeit der Kriminalpolizei mit Auskunfteien und Detekteien, Forschungsreihe Kriminalwissenschaften Bd.,5. 1980.
11.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4Aufl., 1988.
12. Richard Maxwell, What is spy to do, Social Text 56, Vol.16, No.3, Fall 1998, Duke University Press.
13. Christian Tyler, The enemy within, Financial Times, 1997, 4, 12.
14. Maureen Harrington, Sky eye Colorado firms clarify purpose of commercial satellites, Denver Post, 1997, February, 16.

< 부 록 >

공인탐정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인탐정”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조사 및 위법·부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4조(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단속)

- ①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 ②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자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탐정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공인탐정자격시험)

- ① 공인탐정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탐정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검찰청직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정보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이상인 자
 2. 제22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강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이상인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공인탐정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탐정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 공인탐정의 등록

제8조(등록) 공인탐정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탐정으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신청)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등록신청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탐정의 등록신청·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거부) 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탐정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등록취소)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경우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6. 공인탐정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상 휴업한 경우
8.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공인탐정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합동사무소)

① 공인탐정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공인탐정은 등록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공인탐정은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폐업신고) 공인탐정이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가족·동거자 또는 그 업무보조원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신고) 공인탐정이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공인탐정의 권리·의무

제17조(보수)

- ① 공인탐정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 ② 공인탐정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집·조사의 제한) 공인탐정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공인탐정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

제19조(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 ① 공인탐정은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 ② 공인탐정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0조(사건부·기명날인)

- ① 공인탐정은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의뢰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의뢰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의뢰받은 연월일, 건명, 보수액과 의뢰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인탐정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난밖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위임에 응할 의무 등)

- ① 공인탐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인탐정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탐정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공인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 또는 업무완료시에 문서상으로 조사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인탐정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⑤ 공인탐정은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업무보조원)

- ① 공인탐정은 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이하 “보조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 ② 보조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공인탐정은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다.

- ④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탐정의 행위로 본다.
- ⑤ 공인탐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의 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공인탐정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뢰인의 확인) 공인탐정이 사건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 ① 공인탐정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인탐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겸직금지)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27조(등록증등의 게시) 공인탐정은 등록증·보수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제28조(비밀누설금지)

- ① 공인탐정이거나 공인탐정이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인탐정의 보조원이거나 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제29조(교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의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제30조(감독)

- ①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인탐정합동법인

제31조(공인탐정합동법인의 설립) 공인탐정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합동법인(이하 “합동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2조(설립절차) 합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구성원 등)

- ① 합동법인은 5인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
- ② 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공인탐정을 둘 수 있다.
- ③ 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을 둔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합동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은 등록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34조(정관 기재사항) 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5조(명칭 등)

- ① 합동법인은 그 명칭중에 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설립등기)

- ① 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 ③ 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등록) 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분사무소) 합동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집행방법)

- ① 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담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공인담정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

인을 대표한다.

- ③ 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공인탐정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0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 ① 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함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③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합동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2조(해산)

- ① 합동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 ② 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합병) 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4조(준용규정)

- ① 이 법중 공인탐정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법인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공인탐정협회

제45조(공인탐정협회의 설립등)

- ① 공인탐정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인탐정·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협회의 회칙·임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징 계

제46조(공인탐정징계위원회)

- ① 공인탐정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공인탐정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징계)

-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공인탐정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공인탐정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이상 2년이하의 업무정지
 2. 견책
- ③ 협회는 공인탐정이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당해 공인탐정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48조(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49조(권한위임)

- ①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50조(등록증의 대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51조(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행위)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탐정업을 하거나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도화·시설물 등에 공인탐정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경우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조사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
4.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52조 또는 제53조중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공인탐정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제1회 내지 제3회 공인탐정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인 제1차 및 제2차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인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자격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2. “자격체제”라 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력·학위·자격 등이 상호 연계되어 관리·운영되는 체제를 말한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분야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4.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6. “공인자격”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7.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당해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거나 공인자격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8. “민간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격의 관리”라 함은 자격의 체계·분야·종목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을 말하며, “자격의 운영”이라 함은 검정기준·방법 및 과목 등의 설정, 자격검정의 시행 등을 말한다.
10. “자격검정”이라 함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자격체제에의 부합
2. 국가직무능력표준 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체제를 수립하고 이 표준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교육훈련, 자격 그리고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는 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국가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 또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자격관리·운영체제

제5조(자격체제) ①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체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총괄·조정한다.

②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국제기준,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와 내용
2. 직무의 난이도·곤란도 및 중요도
3.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내용과 방법
4.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국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 공인기준 등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단,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는 별도의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고시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통직무능력의 인증) ①국가는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의 대상·절차·활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 국가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의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이수요건·수준평가·국가자격의 수여종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관련 정보관리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직무능력의 향상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자격의 개편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격간의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자격제도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자격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이하 “부총리”라고 한다)소속하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가자격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4.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7.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부총리가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 ③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위원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자격

제12조(국가자격 신설 등)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으로 운영이 곤란한 분야
 3. 국방, 치안, 교육, 국가 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4. 제2조 제4호의 자격
- ② 국가는 제21조에 의해 공인받은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의 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 ③ 국가자격을 신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절차) ①주무부장관은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선·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자격 신설 등의 목적과 필요성, 자격검정 기준과 자격제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받은 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이나 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국가자격을 신설 등에 대한 심의회의 권고) ① 심의회는 국가자격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심의회는 관련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국가자격의 취득) ①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국가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을 수 있다.
- ③ 국가자격증의 교부, 기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2. 주무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 이수자
3. 고용보험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 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6. 기타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과 동등이상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검정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동일명칭 사용금지) ① 국가이외의 자는 누구든지 국가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국가자격의 정비) ① 국가는 자격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을 통합·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자격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자격

제20조(민간자격의 신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이 금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자격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
 3.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격
 4. 기타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공립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자격 공인) ① 국가는 민간자격의 공신력 확보와 사회적 통용성을 향상

시킴을 위하여 제22조에서 규정한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을 위해 필요한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인의 대상) 공인 대상 민간자격은 법인 및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하되, 다음 각호 1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미 공인 받은 자격과 동일한 명칭의 자격
2. 제7조의 공통직무능력 인증 대상의 자격
3. 해산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5. 공인 심사에서 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제23조(공인기간) ① 공인기간은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인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공인효력) ① 공인기간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 종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증의 유효기간 내에는 공인의 효력이 미친다.

② 공인받기 전에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 공인자격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받기 전에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위한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자격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인증서 교부) ① 주무부 장관은 공인이 결정된 민간자격의 종목, 공인내용, 공인조건 및 공인기간 등을 공고하고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증서의 교부·재교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공인자격취득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④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제25조에서 정한 공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⑥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인의 변경) ①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공인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3. 공인자격관리자가 제29조의 책무를 소홀히 할때
 4. 기타 공인 자격을 관리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25조제1항에 의한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해 폐지된 공인자격이 계속 관리·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취소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공인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공인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 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공인증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주무부장관의 책무)**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결정
 2. 공인의 취소 및 폐지
 3. 공인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 및 공인기간 연장
 4. 기타 자격취득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 공인자격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인자격의 통용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자격기본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하여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자격과 관련된 관계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은 공인자격의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3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기타 인사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① 자격취득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취득자는 취득한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격취득의 취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은 3년 이내에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응시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허위광고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민간자격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① 국가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의해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수교육) 주무부장관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당해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주무부장관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공인, 재공인 등을 받고자 하는 자

제41조(별도계정의 설정)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국가자격의 검정을 위임·위탁받은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격을 신설 및 관리·운영하는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공인 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서를 교부한 자 또는 교부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허위·과장 광고한 자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 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44조(벌칙)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허위·과대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당해 법률이 정한 처벌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격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구보고서 2005-01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5년 8월 발행

2005년 8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88번지
인쇄처 : (주) 대한 피앤디
(TEL : (02)2268-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